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경제학 석사 학위논문

외국인 근로자 취업실태와 상용직
취업 결정요인 분석



2016년 2월

부경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NACHINBAYAR AMARZAYA

경제학 석사 학위논문

외국인 근로자 취업실태와 상용직 취업 결정요인 분석

지도교수 류장수

이 논문을 경제학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2월

부경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NACHINBAYAR AMARZAYA

N.Amarzaya의 경제학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6년 2월



주 심 경제학 박사 서 석 홍 (인)

위 원 경제학 박사 황 선 웅 (인)

위 원 경제학 박사 류 장 수 (인)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구성	3
제2장 외국인근로자의 개념 및 선행연구	4
제1절 외국인근로자의 개념	4
제2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제 개념	7
제3절 선행연구	11
제3장 외국인 고용실태 분석	14
제1절 외국인력 추이 및 체류 외국인의 유형	14
제2절 체류 외국인의 현황 및 경제활동 실태	25
1. 체류 외국인의 통계현황	25
2. 체류외국인의 경제활동 실태	34
제4장 외국인 상용근로자 실태 및 상용직 취업결정요인 분석	39
제1절 연구 방법 및 분석자료	39
1. 연구방법	39
2. 분석 자료	39
제2절 변수정의 및 분석 모형	40
1. 변수정의 (종속변수, 독립변수)	40
2. 분석모형(로지스틱 회귀분석)	42
제3절 외국인 상용근로자 실태	42
1.빈도 분석	42
2. 주요변수의 종사상 지위별(상용직, 임시·일용직) 특성 - 교차분석	49

제4절 외국인근로자 상용직 취업여부 결정요인	54
제5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58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58
제2절 연구 한계 및 향후 과제	60
참고문헌	61



<표 목 차>

<표 2-1> 취업자격 체류외국인 자격별 현황	7
<표 2-2> MOU 체결 국가 및 송출기관 현황	10
<표 3-1>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	17
<표 3-2> 한국 정부의 출입국 통계를 위한 외국인 체류자 유형 구분	20
<표 3-3> 체류 유형별 외국인 유입추이	22
<표 3-4> 체류 유형별 외국인의 규모	24
<표 3-5> 국적별 외국인 체류자 현황	26
<표 3-6> 한국인구 대비 외국인 현황	28
<표 3-7> 체류 외국인의 체류자격 변화에 따른 특징	30
<표 3-8> 체류외국인의 지역별 현황	31
<표 3-9> 주요 특성별 15세 이상 외국인의 지역별 분포	33
<표 3-10> 체류외국인 연령별 분포	34
<표 3-11> 체류외국인의 경제활동상태	35
<표 3-12> 체류외국인의 국적별 분포	36
<표 3-13> 외국인고용조사 분포	37
<표 3-14> 외국인고용조사 연령 및 학력별 분포	38
<표 4-1> 변수의 정의	41
<표 4-2> 체류외국인의 사회학적 특성	43
<표 4-3> 체류외국인의 경제적 현황	44
<표 4-4> 체류외국인의 경제활동 실태	45
<표 4-5> 체류외국인의 산업 및 직업 형태	46
<표 4-6> 체류외국인의 국적 형태	47
<표 4-7> 체류외국인의 체류자격 및 계속체류희망 형태	48
<표 4-8> 종사상지위별 외국인 취업자	49
<표 4-9> 체류자격 및 국적, 산업별 종사상지위 외국인 취업자	51
<표 4-10> 상용직근로자 및 임시·일용근로자 배우자국적별 교차분석	52
<표 4-11> 상용직근로자 및 임시·일용근로자 학력별 교차분석	52
<표 4-12> 상용직근로자 및 임시·일용근로자 직업별 교차분석	53
<표 4-13> 상용직근로자 및 임시·일용근로자 임금별 교차분석	54
<표 4-14> 상용직 외국인근로자 취업에 미치는 영향력	55

[그 립 목 차]

[그림 2-1] 취업비자 외국인력 추이	6
[그림 3-1] 체류 등록외국인의 증감추이	27
[그림 3-2] 합법·불법 체류 외국인 추이	29
[그림 3-3] 외국인주민의 지역별 분포(2014년 기준)	32



The Working Condition of Foreign Workers and Determinants of Regular Employment

Nachinbayar Amarzaya

Department of Economics, The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thesis uses data from 『Foreigner Labor Force Survey, 2014』 report which published from Statistics of Korea. According to the report, foreign manpower had increased yearly and as of May, 2014, it was reported that a total of 1,256,000 foreigners the age of 15 and above were in Korea. The number of employed foreigners were 852,000, unemployed foreigners were 44,000 people and economically inactive foreigners had reached to 360,000 people. The range of the topic of discussion, this thesis will cover the empirical analysis of the determination which of the primary factor of Foreign Regular Employment.

Before conducting the empirical analysis, previous studies and the background theory of residential foreigners are presented.

Due to the need to have a grasp on the characteristics, patterns and present state of the survey's target population, a statistical analysis was done on the actual conditions of Foreigner Employment.

In the first empirical analysis, a basic statistical analysis was conducted in order to gain a better understanding on the participation

and economical activities of foreigners who are the age of 15 and above in the Korean Labor Market.

In the second analysis, a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in order to understand the influence of the determining factor of regular employment.

The result of th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is seen for males rather than females, people in their forties rather than those in their twenties, a higher educational background, Non-Asian nationalities rather than Korean-Chinese, larger scale companies and manufacturing companies.

In addition, a significant negative influence is seen for working areas closer to the capital city, those with Korean spouses, those with visitor's visa or overseas Korean rather than those with non-professional employment as residential qualifications. Also the negative influence was seen for office, service, sales, machinist, fabrication, agricultural and simple labor occupations rather than those with management or professional occupations.

초록

본 논문은 통계청의 2014년도 『외국인고용조사』 원시 자료를 사용했다. 외국인력은 매년 증가하여 2014년 5월 현재, 한국에 상주 15세 이상 외국인은 125만 6천명이며 취업자는 85만 2천명, 실업자는 4만 4천명, 비경제활동인구는 336만 명에 이르고 있다. 본 연구가 다루는 주제의 광범위성 및 논의수준 등을 고려하여 한국에서의 외국인 정규직(상용직) 취업결정요인을 실증 분석하였다. 실증 분석을 시행하기에 앞서 체류 외국인의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를 제시하였다. 또한 분석대상이 되는 모집단에 대한 특성, 유형 및 현황을 모색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통계적인 고용실태 분석을 제시하였다.

실증 분석은 첫 번째, 한국에 상주하고 있는 15세 이상 외국인의 한국 노동시장에서의 참가 및 경제활동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기초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두 번째는 상용직 취업결정요인에 어떤 영향들이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여성에 비해 남성이, 20대에 비해 40대일수록, 고학력일수록, 국적이 한국계 중국인에 비해 비아시아일수록, 사업체규모가 클수록, 산업이 제조업일수록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근무지역이 수도권일수록, 배우자국적이 한국인일수록, 체류자격이 비전문취업에 비해 방문 및 재외동포일수록, 직업은 관리 및 전문직에 비해 사무·서비스·판매, 기능원·기계조립, 농어업·단순노무가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세계 경제는 점차 하나로 통합되어 가고 있다. 세계경제의 통합과 세계화에 따라 한 나라의 국경을 넘어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며 세계적인 인구 이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늘날의 세계노동시장 역시 예전에 비해 더욱 활발하게 작동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한국 노동시장에서도 목격하고 있다. 1980년 이후 한국경제는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임금 수준도 상승했다. 또한 한국인들의 학력 수준의 높아짐에 따라 관심도 달라지고 높은 임금, 행복한 삶을 원하고 대기업 등 좋은 일자리를 찾아가게 되었다.

그 당시 한국에서는 3D(Dangerous, Dirty, Difficult)관련 중소제조업체에서는 인력수급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의 기업들은 값싼 외국인 노동력을 선호하게 되었다. 시장 개방에 따른 세계화는 유통되는 상품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내국인근로자들의 3D 업종의 기피하는 현상은 한국 내 노동시장에 단순기능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유입을 가속화시켰다.

전 세계의 대부분 국가들은 값싼 외국인근로자를 기업에 제공하여 생산원가를 절감하고,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한국도 소규모 기업들의 부족한 노동력을 대체하기 위해 국내 노동시장에 외국인근로자를 개방함으로써 안정된 노동력을 제공해 왔다. 그 결과 국제 노동

이동이 활발해지고 기업의 노동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내에 외국인의 장단기적인 체류자가 급증하고 있다.

국제적 노동이동의 문제는 선진 국가와 후진국가 간에 존재하는 경제발전 수준의 심각한 격차에서 비롯되고, 후진국가의 근로자들은 선진국가의 높은 임금과 일자리를 찾아 내국인근로자가 기피하는 직종에 고용하게 된다. 언어 및 문화적인 여건과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자국보다 나은 임금, 나은 경제적 상황을 확보를 위해 자국에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국가로 이동한다.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돈을 많이 벌고 “더 좋은 삶”을 추구하는 욕구는 가장 큰 요인이 될 수도 있지만 한편, 자국의 1인당 GNP 차이로 인한 임금격차는 외국인근로자를 유입시키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한국에서 고용되고 있는 외국인들의 대부분은 아시아 출신의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들이다. 본 연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들과 관련된 노동시장제도, 고용허가제에 대한 정책, 외국인들의 장단기체류자격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외국인근로자의 현 유입추이 및 노동시장 참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자 한다. 현재 한국에 있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분석한 연구들을 보면 기업입장 또는 외국인근로자를 관리하고 있는 한국인 관리자 입장에서 연구하는 것이 다수이며, 외국인근로자 입장에서의 연구는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연구는 문헌연구와 고용노동부, 한국노동연구원, 통계청 등 관련 기관에서 제공하는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기업들의 관점에서 보면 기업은 고기능 외국인근로자를 저임금으로 사용하는데 목적이 있지만, 외국인근로자는 임금과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정규직(상용직)으로 근무하는 것을 선호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연구는 외국인근로자의 정규직(상용직) 취업 결정요인도 분석

할 것이다.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첫째, 현재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노동제도 및 고용허가제를 파악하고, 둘째는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고용실태를 파악하고, 셋째는 통계청에서 실시한 2014년도 『외국인고용조사』 원자료를 사용하여 정규직(상용직) 취업결정요인을 분석할 것이다.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구성

이 연구의 내용 및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 목적, 구성을 설명한다. 제2장은 이론적 배경을 설명한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노동제도 및 고용허가제의 개념 및 이론을 소개한다. 그리고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제3장에서는 체류 외국인의 현황, 유입추이와 현상적 특징을 정리하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유형별 구분 및 통계적 자료를 통해 체류 외국인의 노동시장 실태를 통계적 검토를 하였다. 제4장에서는 분석자료 및 연구모형을 설명하였다. 분석에 사용하는 자료로 변수특성별 경제적 현황, 경제활동 실태, 산업 및 직업 형태 등의 기초 통계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활용한 한국에서 상주하는 15세 외국인 대상으로 실증분석에 사용된 주요변수를 설명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상용직 취업결정요인을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으로 연구내용을 요약정리하고 한계 및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

제2장 외국인근로자의 개념 및 선행연구

제1절 외국인근로자의 개념

체류외국인 및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 논문에 사용하는 외국인이주민 및 외국인근로자란 용어에 대해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먼저 개념을 정리하고자 한다.

한국의 출입국관리법 제2조 2항에 따르면 외국인을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1장 제14조에서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이 두 가지를 합해 보면 외국인근로자를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로서 직업의 종류와는 상관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다.¹⁾ 다만 「출입국 관리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받은 외국인 중 취업 분야 또는 체류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원칙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에서 일하는 모든 외국인 노동자가 포함되나 통상적으로 ‘외국인 노동자’ 또는 ‘이주 노동자’라고 말할 때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이주노동자에 국한된다.(네이버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2015년)

1980년 초기까지 노동력의 수출 국가였던 한국은 1980년대 중반 이후로 외국노동력을 수입하는 국가로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이 시기에는

1) 박두양(2013), 석사학위논문, p.6에서 참고하였다.

한국의 경제 성장과 더불어 의식 있는 근로자들이 생겨나면서 노동조합설립과 함께 노동운동으로 인한 임금 상승이 이루어졌다. 1987년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로 인해 한국 대기업 생산직 근로자들의 임금이 빠른 속도로 상승했다. 이와 같은 근로자들의 의식화와 경제성장으로 소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더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한국인들이 근로 조건이 열악하고 임금 수준이 낮은 이른바 영세 기업의 ‘3D 업종’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 결과에 따라 제조업 분야의 중소기업이 노동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노재철, 2009).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에 의하면 외국인 근로자(Foreign Workers)를 이주노동자(Migrant Workers), 이민노동자(Immigrant Workers), 초빙노동자(Guest Workers), 단기노동자(Temporary Workers), 계약노동자(Contract Workers), 이방인노동자(Alien Workers) 등 다양한 명칭으로 표현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정의들에 입각하여 외국인 노동자, 이주 노동자, 혹은 계약 노동자 등의 법적 용어인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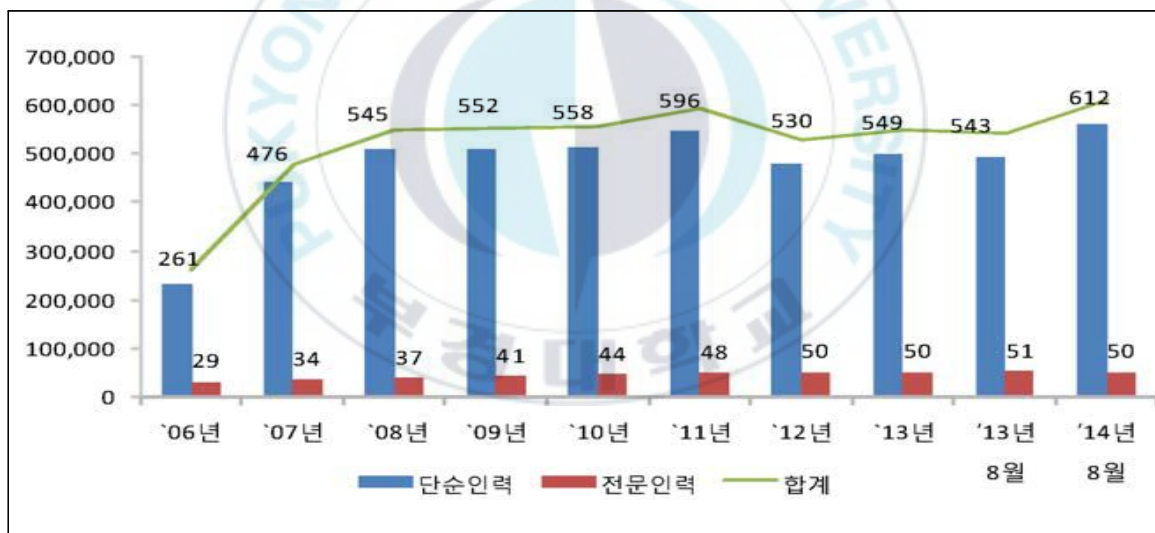
외국인근로자는 고용허가제에 의한 비전문취업근로자, 방문취업제도에 의한 방문취업근로자와 미등록 체류 외국인근로자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 첫째, 비전문취업근로자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이 가능한 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의미하며,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의거하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라 함은 단기취업(C-4), 전문취업(E-1~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E-2)의 체류자격을 말한다고 규정되고 있다. 둘째, 미등록 체류외국인 근로자는 관광, 단순기능인력, 방문 등의 상황으로 단기비자를 받고 한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이 초과한 채로 취업한 경우인 ‘체류기간 초과 취업자’와 체류하는 것은 합법적이나 취업하는 것은 불법인 ‘자격 외 취업

자’그리고 정식 입국 절차를 위반하고 한국에 입국하여 취업 중인 ‘밀입국 취업자’를 포함하는 개념이다.²⁾

체류자격별 현황은 크게 전문 인력과 단순기능인력 현황으로 나눌 수 있다. 고용허가제 도입 후 체류자격별 외국인근로자 총 체류자는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4년 고용허가제의 도입 및 2007년 방문취업제의 도입으로 큰 폭의 증가를 하였는데 2014년 8월말 현재 612천 명에 이르고 있으며 전문 인력규모는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4년 8월말 현재 5만 명에 이르고 있다.

[그림 2-1] 취업비자 외국인력 추이

(단위: 천명, %)



자료: 이규용 외(2014), “체류외국인 및 이민자 노동시장 정책과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1항에 따라 국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외국인들을 체류자격별로 나누어 보면, 법에서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은 우선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

2) 이하의 내용은 강라현(2012), 요약함.

(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홍행(E-6) 그리고 특정활동(E-7) 등의 전문인력과 단기취업(C-4),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등의 비전문인력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2014년 12월 31일 상태로는 총 체류자는 617,145명, 합법체류는 547,220명, 불법체류자는 69,925명이다.

<표 2-1> 취업자격 체류외국인 자격별 현황

(단위: 명)

구분		총 체류자	합법체류자	불법체류자
합계		617,145	547,220	69,925
전문 인력	소계	49,503	44,085	5,418
	단기취업(C-4)	593	451	142
	교수(E-1)	2,664	2,684	16
	회화지도(E-2)	17,949	17,870	79
	연구(E-3)	3,195	3,186	9
	기술지도(E-4)	186	184	2
	전문직업(E-5)	645	622	23
	예술홍행(E-6)	5,162	3,504	1,658
	특정활동(E-7)	19,109	15,620	3,489
단순 기능 인력	소계	567,742	503,135	64,507
	비전문취업(E-9)	270,569	217,809	52,760
	선원취업(E-10)	14,403	9,429	4,974
	방문취업(H-2)	282,670	275,897	6,773

자료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4), 통계연보

제2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제 개념

과거 한국은 외국으로 노동자들을 수출하여 있었지만, 현재 한국에서는

경제적 성장 더불어 3D업종에 대한 기피현상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외국인근로자는 필수적인 존재가 되었다.

이들에 대한 정책은 1991년에 산업연수생제도³⁾로 도입되었다. 정식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산업연수생 중 상당수가 연수업체를 이탈해서 불법취업자가 되는 상황이 늘어났다. 급증하는 불법취업자의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 2002년에 산업연수생제도를 폐지하였다. 그 이후 2002년 12월부터 서비스 분야에 외국국적 동포를 대상으로 방문 동거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한국에서 취업활동을 허용하는 “취업관리제”를 실시하게 되었다. 또한 10여년 만인 2004도에 외국인근로자가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고용허가제” 도입이 이루어졌다. 외국국적 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허가제는 고용허가제와 통합되었고, 기존의 산업연수생 제도는 고용허가제와 병행하여 시행되었다가 2007년 1월 1일부터 고용허가제가 통합 시행되었다(강라현, 2012).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사업주에게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를 부여하고 한국 정부는 이 사업장에 취업하는 것을 전제로 외국인에게 취업비자를 발급해주는 제도다. 외국인력을 고용하려는 사업자가 직종과 목적 등을 제시할 경우 정부(노동부장관)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외국인력 도입 정책으로 대부분의 유럽국가와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국외에서 직접 모집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한 공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을 통해 모집할 수 있으며, 외국인근로자는 송출국의 국가기관 또는 그 국가가 인정하는 기관을 통해야 한다. 사용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노동허가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계약 체결할 때 임

3) “산업연수생제도는 현실적으로는 비숙련외국인 노동자를 합법적으로 확보한다는 성격을 가진 제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외국인 ‘노동자’가 아니라 ‘연수생’의 자격으로 입국을 허가한 것으로 비숙련외국인 노동력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방침의 표현으로 해석되고 있다.”

금·근로시간·휴일·휴가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과 동거를 위한 가족동반 금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이 제도는 사업자에게 허가권을 행사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초과수요를 사전에 통제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내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음을 입증하여야만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되므로 내국인근로자의 고용기회가 보장되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따른 근로조건 악화를 방지할 수 있다. 또 고용을 허가할 때 근로조건을 준수할 수 있는 사업자인가를 확인할 수 있어 무자격사업자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근로자의 권익을 충실하게 보호할 수 있다. 고용허가제는 국내 사업자에게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외국인 근로자에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노동 허가제와 다르다.

고용허가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에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허가하고, 외국인근로자에게는 최장 4년 10개월간 취업을 허용하는 인력제도다. 주로 국민의 고용이 쉽지 않은 3D 업종의 직종으로 제한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국내 노동시장을 보호하면서 3D 관련 중소기업체의 인력난 완화를 위하여 부족한 생산인력을 보다 체계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 내 유입의 확대정책을 공급하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권익보호 강화 및 송출과정의 투명성 제고, 불법체류, 노동권 제약 등의 사회문제로 부각되어 다양한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04년 8월부터 외국인고용허가제를 도입·운영하였으며, 운영과정에서 고용허가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산업연수생제도에서 송출비리, 인권 침해, 불법체류 가시적으로 개선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권익향상에 기여해 왔다.

외국인근로자를 유입할 송출국가 선정은 외국인력 정책위원회에서 결정

하며, 고용주의 선호도, 송출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근로자의 귀국담보 가능성, 근로자의 사업장 이탈율, 외교적·경제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 후 1차 송출국가로 선정된 국가는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6개국, 2차 송출국가는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중국, 캄보디아로 4개국이 선정되었으며 최근 방글라데시, 키르기즈스탄, 네팔이 MOU(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고용노동부, 2011). MOU(양해각서)는 송출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양국 정부의 책임강화를 위해 고용허가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도입국가 정부(대한민국 고용노동부 장관)와 송출국가 정부(노동관련 부처의 장)가 양 당사자가 되어 체결하게 된다.

<표 2-2> MOU 체결 국가 및 송출기관 현황

국가	MOU체결 부처	송출기관
필리핀	노동고용부(DOLE)	해외취업청(POEA)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MOLISA)	해외취업센터(OWC)
태국	노동부(MLKT)	고용국(DOC)
인니	인력이주부(DMT)	송출보호청(NBPPION)
스리랑카	해외고용증진 및 복지부(MIFEPW)	해외고용국(SLBFE)
몽골	노동사회보장부(MSWL)	해외인력송출센터(COE)
우즈베키스탄	노동사회보장부(MOLSPP)	해외인력이주청(AFLMA)
파키스탄	해외인력이주청(AFLMA)	해외취업청(OEC)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MLVT)	인력훈련 및 해외송출청(MTOSB)
중국	상무부(MOFCOM)	국제경제합작사무국(EBIEC)
방글라데시	해외근로자복지 및 해외취업부(MEWOEB)	해외고용서비스공사(BOESL)
키르기즈스탄	이주 및 고용위원회(SCKRME)	정보상담센터(ICC)
네팔	노동교통부(MOLTM)	노동고용증진국(DOLEF)
미얀마	노동부(MOLUM)	해외 인력 송출 공사 (ShweInn Wa)
동티모르	직업훈련고용부(SSVTE)	해외고용사무소(OEO)

외국인력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비전문 외국인력 수가 증가하고 외국인력 활용 사업장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었고, 국제결혼의 증가, FTA의 확대 등 국내외 환경 또한 외국인력 유입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리고 최근에는 단기 인력난 해소를 위한 단순기능인력 도입 차원을 넘어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외국인력 확대가 선택 가능한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외국인력 증가는 인력난 해소, 지식·기술 전파, 다양성 증진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국내 일자리 잠식, 임금 하락 등 부정적인 면도 상존하여, 중장기적으로는 외국인력 증가로 해당분야의 근로조건이 저하되고 국내 인력공급 기반이 붕괴될 경우, 인력부족이 외국인 공급으로 직결되는 악순환에 빠질 위험도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4년 고용허가제 시행 10주년을 맞이하여 노동시장 수급상황을 고려한 적정규모의 외국인력 도입을 통해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여 기업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장기적 관점에서 고용허가제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국내 노동시장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양질의 외국인력을 선발하여 공급하고, 체계적인 고용관리를 통하여 사업주 편익 증진 및 외국인근로자의 권익향상을 도모하고, 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 국내적응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고용노동백서2015).

제3절 선행연구

한국에서 다양한 분야에 취업을 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전체적인 체류 외국인 현황과 유입추이 및 비전문적 외국인력 중심으로 한국 노동시장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원인과 외국인력 수요의 결정요인 등

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왔다. 이와 관련된 실증 연구로는 유길상·이규용(2002), 유승균(2010), 진평천(2012), 이규용 외(2014) 등이 있다. 선행연구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유길상·이규용(2002)의 연구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관리실태 및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하여 국내외 문헌조사, 외국사례조사, 실태조사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물론 기존의 실태조사들은 외국인 근로자 문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지만 2000년대 초기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최근의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기업체 조사와 외국인 근로자 조사를 병행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관리 실태에 초점을 맞춘 실태조사를 수행하였다.

유승균(2010)의 연구는 외국인근로자의 특성 및 고용 결정요인을 제시한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고용하고 있는 300인 미만 제조업의 중소·영세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관리하는 한국인 관리자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특성 및 고용 결정요인을 실태조사로 분석하였다. 수도권에 외국인 근로자의 약 70%가 집중되어 있어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위한 결정요인 분석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진평천(2012)의 연구는 현재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치우개선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본 논문을 통해 이에 대한 현황과 개선 방안 및 전략을 도출했다. 본 연구는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그 대책을 제시하는 것으로 연구범위를 한정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조건과 근로환경의 실태를 분석한 후, 근로환경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할 전략을 제시했다.

이규용 외(2014)의 연구는 한국에 장·단기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들의 유형별 현황, 한국 노동시장에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외국인력
원인, 수요의 결정요인을 검토해서 제시했다. 이 연구에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 1-4차년 300인 미만 중소기업체만을 연구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했다.



제3장 외국인 고용실태 분석

제1절 외국인력 추이 및 체류 외국인의 유형

1980년대 이후 노동력의 국제적 이동은 역사상 유례없이 크게 활성화 되기 시작했다. 한국도 빠른 속도로 세계화의 변화를 경험해 왔다. 1980년 이후 한국의 대기업들은 고비용과 생산원가 절감을 위해 값싼 노동력을 찾아 외국인 고용과 해외생산 및 해외투자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한국 정부는 산업현장에서 값싼 외국인 노동력의 확보를 위해 외국인 고용을 용이하도록 정책의 전환을 시도하였다.

한국은 1960년대 이후로 독일, 중동 등 각국으로 인력을 수출하는 나라였으나, 1980년 대 중반 이후로 인력부족현상을 겪게 되면서부터 외국인력을 수입하는 나라로 전환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러한 노동력의 국제이동에 있어 전환이 도래하게 되었는가?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근로자의 가치관 변화를 들 수 있다. 이제 오늘날의 근로자들은 시간이 갈수록 이른바 절대빈곤의 경계선을 대체로 넘어섰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임금상승뿐 아니라 안정된 고용, 승진의 기회, 자기계발의 기회, 건강한 사회생활, 여가시간 등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을 높여 나가고 있고, 일 속의 보람을 추구하는 등 욕구 수준의 고도화가 사회 전반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욕구 수준의 고도화는 그동안 정부가 정책적으로 추구해 온 고학력화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즉 근로자의 교육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근로자의 일자리 선택 폭이 대체로 확대되면서

이들은 선배 근로자처럼 더 이상 열악한 근로조건 아래서 '희생'을 감수하지는 않으려고 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이른바 '3D노동'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둘째, 그 결과 국내에서 지난 5년간 실업률은 2.5%를 넘지 않을 정도로 거의 완전고용 수준에 있고, 그나마 고학력 실업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결국 한국의 노동시장 상황이 대단히 악화된 것이다. 특히 인력난이 심한 곳은 상대적으로 저학력 근로자들을 찾는 중소기업에서이다. 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1995년 3월 말 현재 한국의 전 산업 노동력 부족인원은 총 18만 3,000명에 이른다. 이것은 이직자로 인한 대체충원 요구수인 5만 9,000명에다가 새로운 인력수요 12만 4,000명을 더한 것이다(노동부, 「95 노동력 수요 동향조사」). 결국 한국의 노동력 총 부족률은 3.71%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인력난 문제가 경기변동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현상이라는 것이 심각하다. 동시에 인력난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것도 그 특징 중의 하나이다. 즉 중소기업, 생산직, 고졸 이하 저급 인력의 부족이 심화되어, 이른바 2차 노동시장이라 할 수 있는 '3D부문'의 인력난이 심화되는 것이다. 이것은 중소기업의 구조적 취약성에 기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기업은 상대적으로 고학력 근로자를 고용할 뿐 아니라, 여러 가지 구조조정을 할 재정적 여유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취직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도룩한데, 막상 중소기업에서는 요긴하게 쓸 사람을 제대로 찾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에서도 잘 드러난다.

셋째, 이제 취약한 조건 속에서도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들을 더 이상 구하기가 어렵다면 기업의 입장으로서도 대체로 두 가지 전략적 선택이 있을 수 있다. 그 하나는 국내에서 더 이상 경영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장 문을 닫고 업종 전환을 하거나 해외로 나가는 것이다. 하지만 해외로 나가서 '세계경영'(Global Management)을 하는 경우에는 여러

부문의 투자재원이 소요하므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전략일 수밖에 없다. 다른 한 전략은 예전과 비슷한 근로조건에서도 열심히 일할 의사가 있는 값싼 해외 노동력을 수입하는 정책이다. 이것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전자보다도 그 위험 부담이 적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여러 정책들이 한국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를 촉진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외국인 근로자유입의 배경은 경제적인 측면과 정치적인 측면에서 동시에 찾아볼 수 있으나 실질적인 원인은 산업현장에서의 인력부족, 인구고령화로 노동생산성 저하, 젊은층의 3D 업종기피현상, 그리고 고비용의 인건비, 국제경쟁력 강화 등 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송병준 외, 1997).

대한민국에는 다양한 국적의 많은 외국인들이 살고 있다. 이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에 관한 사항은 “출입국관리법”이 규정하고 있다. 체류 할 때에는 각자의 사회적 활동의 범위나 그 신분에 따라 체류자격이 정해지게 된다. 이런 식으로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 기간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다양한 자격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체류자격유형의 따라 서로 다르며,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지정된 기준의 체류자격을 변경하거나 그 체류자격 외의 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혹은 일정 기간 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표 3-1>에서 보듯이 비자유형별 체류자격에 따라 체류기간이 정해져 있다. 반복갱신이나 기간연장 할 때에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 계속될 수도 있으나 어떤 비자는 체류연장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여기에서 관심을 갖는 영역은 경제활동을 위해 취업비자로 한국에 체류

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대상이다.

체류자격을 국제기준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⁴⁾ OECD는 각국의 비자체계를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통해 국제비교를 수행하고 있다. 표준화된 분류의 기본 틀은 ‘제외’, ‘한시적 체류’, ‘준영구적 체류’, ‘영구적 체류’ 형태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분류가 갖는 의미는 국내 체류 외국인 정책에 대한 향후의 정책방향을 모색함에 있어 이들의 체류자격을 어떻게 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논의의 출발점이 된다. 외교, 공무, 협정, 사증면제 및 단기체류 비자는 등록외국인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들은 표준범주에서 제외한다.

<표 3-1>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

체류자격(기호)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체류자격(기호)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1. 외교 (A-1)	재입기간	18. 무역경영(D-9)	2년
2. 공무(A-2)	공무수행기간	18의 2. 구직(D-10)	6개월
3. 협정(A-3)	신분존속기간 또는 협정상상의 체류기간	19. 교수(E-1)	5년
4. 사증면제(B-1)	협정상상의 체류기간	21. 연구(E-3)	2년
5. 관광통과(B-2)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	22. 기술지도(E-4)	5년
6. 일시취재(C-1)	90일	23. 전문직업(E-5)	5년
7. 삭제 <2011.12.23>		24. 예술홍행(E-6)	3년
8. 단기방문(C-3)		25. 특정활동(E-7)	3년
9. 단기취업(C-4)		25의 2. 삭제 <2007.6.1>	
10. 문화예술(D-1)	2년	25의 3. 비전문취업(E-9)	3년
11. 유학(D-2)	2년	25의 4. 선원취업(E-10)	1년
12. 기술연수(D-3)	2년	26. 방문동거(F-1)	2년

4) 이하의 내용은 이규용 외(2014), “체류외국인 및 이민자 노동시장 정책과제” p. 12에서 요약함

13. 일반연수(D-4)	2년	27. 거주(F-2)	3년
14. 취재(D-5)	2년	28. 동반(F-3)	동반하는 본인에 정하여진 기간
15. 종교(D-6)	2년	28의 2. 재외동포(F-4)	3년
16. 주재(D-7)	2년	28의 3. 영주(F-5)	상한 없음
17. 기업투자(D-8)	영 별표 1의 17. 기업투자(D-8)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 5년	28의 4. 결혼이민(F-6)	3년
		29. 기타(G-1)	1년
	영 별표 1의 17. 기업투자(D-8)의 나목·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 2년	30. 관광취업(H-1)	협정상의 체류기간
		31. 방문취업(H-2)	3년

자료 :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시행(2013.11 개정).

외국인이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부여되어 한국에서 장·단기로 머물 수 있다고 해서 누구나 국내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표 3-1>에 있는 체류자격에는 “취업 할 수 있는 자격”, “취업 할 수 없는 자격” 두 가지로 분류된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

- 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알선할 목적으로 그를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이 있다.

이종원 외(2013)의 연구는⁵⁾ OECD와 UN의 권고안을 토대로 이주자 유형을 단기적 이주자, 장기적 이주자로 구분하고, 장기적 이주자를 비영구적 이주자와 영구적·준영구적 이주자 유형들로 다시 구분하는 접근법을 취해보자고 제안하고 있다. 즉, 한국 통계청의 출입국 통계에서 이주자 유형을 단기적 이주자, 장기적 비영주권자, 장기적 영주·준영주권자 등 세 가지로 구분하는 접근법이다. 단기적 이주자와 장기적 이주자를 구분하는 기준선은 UN 권고안에 따른 거주기간 1년이고, 비영주권자와 영주·준영주권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5년 이상의 체류허가기간을 얻을 수 있는가 여부로 설정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장기적 비영주권자는 OECD 기준에서는 한시적 이주자이지만 UN 권고안에서는 장기적 이주자로 구분되는 집단들이다. 따라서 이 기준에 따르면 OECD 기준에 의해 한시적 이주자였던 유학생이나 연수생의 경우에는 거주허가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장기적 비영주권자로 분류될 수 있다.

5) 이하의 내용은 이규용 외(2014), “채류외국인 및 이민자 노동시장 정책과제” p. 15

<표 3-2> 한국 정부의 출입국 통계를 위한 외국인체류자 유형 구분

이주자 유형		기준	체류자격별 분포
비이주자		통상적 거주국 병경이 없음	외교(A-1), 공무(A-2), 협정(A-3), 사증면제(B-1), 관광*통과(B-2), 일시취재(C-1), 단기방문(C-3), 단기취업(C-4)
단기적 이주		거주기간 1~5년	구직(D10), 관광취업(H-1)
장기적	비영주	거주기간 1~5년	유학(D-2),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예술홍행(E-6), 주재(D-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영주·준영주	거주기간 5년 이상 가능	취재(D-5), 종교(D-6),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특정활동(E-7), 방문E동거(F-1), 거주(F-2), 동반(F-3),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자료: 통계청, 외국인고용조사(2014) 원자료

동일한 문제의식에서 외국인수와 외국출생인구가 전체 인구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국제적으로 비교가 필요한 통계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이주자의 특성과 노동시장 성과에 관한 통계들도 국제비교성이 가능한 통계들이라고 할 수 있다. 각 이주자 유형들의 성별 분포와 고학력 비중, 국적별 분포, 가족 동반 비율, 그리고 노동시장 성과 통계로서 고용률과 실업률 등이 그 대표적인 통계들이다. 이들 통계들은 국제비교 뿐만 아니라 한국 이주정책의 기초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통계들이기도하다.

2015년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총 체류자는 1,757,261명에 이르고 있다. 현재 외국인의 유입은 값싼 노동력의 확보뿐만 아니라 중국동포, 결혼이민자의 증가로 인해 더욱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외국인 노동자 유입의 배경은 경제적인 및 정치적인 측면에서 동시에 찾아볼 수 있으나 실질적인 원인 산업현장에서의 인력부족 인구고

령화로 노동생산성 저하, 청년의 3D 업종기피현상, 그리고 고비용의 인건비, 국제경쟁력 강화 등 주로 경제적인 면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⁶⁾

한국에서는 체류외국인의 최신 현황과 특성을 알 수 있는 통계 자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⁷⁾ 첫째, 출입국 통계자료이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제공하는 통계자료는 월보와 연보로 각각 발행하고 있다. 출입국통계월보는 출입국현황, 외국인체류관리현황, 출입국관리법위반자 처리현황 등을 월마다 발행하고 있다. 통계연보는 출입국자 통계, 체류외국인통계, 불법체류외국인의 통계, 결혼이민자 통계, 출입국사법통계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통계연보는 국적, 체류자격별, 지역별 등 외국인현황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어서 체류외국인에 대한 특성을 살펴볼 수 있다.

둘째, 통계청의 조사 자료이다. 국제인구이동통계, 인구동향, 외국인고용조사가 있다. 국제인구이동 통계는 내외국인의 국제이동, 국적별 외국인의 국제이동을 총 이동, 입국자, 순 이동으로 구분하여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인구동향조사는 외국인, 귀화자의 혼인, 이혼, 출생, 사망자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외국인고용조사는 2012년부터 매년 1회 등록외국인의 조사를 통해 외국인의 경제활동실태에 대한 정보, 취업, 고용률, 실업, 임금, 학력 등에 대한 정로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조사하는 대상자 수가 많지 않아서 분석에 한계가 있지만 체류외국인의 경제활동실태에 대한 대표적인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셋째,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자료이다. 고용노동허가제 원자료, 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가 있다. 고용노동허가제 원자료는 고용허가제의 인적특성(성, 출생년월, 국적, 혼인여부, 학력수준), 사업장 정보(업종, 직종, 지역, 월임금)을 조사한다. 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는 외국인근로자 현

6) “송병준(1997), “외국인 노동자의 현실과 미래”

7) 이하의 내용은 “체류외국인 및 이민자 노동시장 정책과제”에서 요약함.

황, 부족인연, 부족률, 채용계획인원, 구인인 원, 채용인원, 미충원인원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는 외국인근로자 총 근로시간 및 임금총액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표 3-3> 체류 유형별 외국인 유입추이

(단위: 명)

체류자격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비영구 장기체류							
유학(D-2)	14,703	14,845	16,764	15,634	15,355	19,151	21,931
비전문취업(E-9)	45,894	24,047	34,862	50,113	54,545	59,522	53,219
방문취업(H-2)	105,609	75,757	70,963	50,271	41,357	68,653	90,733
준영구 1(취업)							
교수(E-1)	562	581	530	542	557	518	484
회화지도(E-2)	11,990	13,327	12,436	10,873	9,996	8,700	6,976
연구(E-3)	580	550	692	742	762	881	758
기술지도(E-4)	57	34	63	15	27	38	20
전문직업(E-5)	130	105	107	121	167	101	101
특정활동(E-7)	2,655	2,305	3,397	4,808	5,430	3,755	3,912
준영구 2(가족)							
방문동거(F-1)	5,554	5,335	8,410	6,955	7,132	7,684	8,091
거주(F-2)	23,537	20,515	21,648	20,333	2,428	2,775	2,149
동반(F-3)	2,888	2,939	3,229	3,583	4,160	5,094	5,172
결혼이민(F-6)	-	-	-	783	17,001	15,890	12,204
준영구 3(기타)							
재외동포(F-4)	4,198	4,942	15,529	20,999	19,480	28,587	40,802
영주(F-5)	586	610	1,192	2,741	3,928	5,062	5,509

자료: 통계청, 국제인구이동통계자료(2014)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28023&conn_path=I2

외국인의 유입규모는 출입외국인정책의 방향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는 지표라고 볼 수 있다. 각각의 자격별 분석은 장기체류자로 정의된 외국인 중 주요 체류 외국인의 유입추이 및 체류 규모를 통해 체류 외국인의 연간 총 유입자 수로 유형별 통계적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⁸⁾ 먼저 비영

8) 이하의 내용은 “체류외국인 및 이민자 노동시장 정책과제” p. 18에서 요약함.

구 장기체류자의 유입추이이다. <표 3-3>을 보면 유학생의 유입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14년 유입규모는 21,931명으로 지난 10여년 동안 가장 큰 규모이다. 비전문취업과 방문취업은 한시적 체류자로 최대 체류기간이 4년 10개월이다. 비전문취업의 경우는 2008년 제외하고 2010년까지 연간 3만여 명이 유입되었으나 2011년부터는 5만 명을 넘어 유입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53,219명이 입국하였다. 방문취업자의 경우 제도를 시행한 2007년에 93만 명이 유입한 후 2008년에는 105,609명으로 입국자가 증가하였으나 이후에는 감소추이를 보여 2012년에 41,357명으로 가장 낮은 규모이다. 2014년에는 90,733명이 유입하여 크게 증가하였다. 양자는 모두 한국 정부가 국내 노동시장영향을 고려하여 유입규모를 통제하고 있다. 비전문취업 경우는 해마다 도입규모를 정하고 있으며 방문취업 경우는 총 비자 발급규모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체류자격은 정부의 정책결정에 의해 도입규모가 결정된다.

둘째는 취업형태로 유입한 준영구 체류자의 유입추이이다. 이 체류자격은 우수인재 유치정책의 주요 목표 집단들이다. 한국 정부는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모색해 왔으며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 10년 동안 유입규모가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셋째는 가족이주 형태의 준영구 체류자의 유입추이이다. 방문동거 체류자의 경우는 2008년과 2009년에 5천 명으로 입국한 후 2010년부터는 크게 증가하여 매년 7천 명을 상회한 규모로 입국하고 있다. 거주 체류자는 2011년까지는 2만여 명으로 유입되었다가 2012년 이후에는 2천여 명으로 유입하고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넷째는 기타 준영구 비자 체류자의 유입추이이다. 여기에는 재외동포비자와 영주권 비자로 입국한 체류자격이다. 2008년부터는 재외동포자는 크게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방문취업자의 규모를 줄이는 대신에 재외동포자를 받아들이는 정부의 정책

결과이다. 영주자의 경우에도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다.

외국인들의 유입규모가 매년 일정한 수준의 추세를 유지되더라도 이들의 유출이 적게 이루어지면 외국인의 체류규모는 증가할 것이다. 현재 제공하고 있는 통계자료에는 체류자격별 외국인 순유출(outflow)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유입규모와 현재 저장규모를 통해 유출규모를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유입 및 유출규모의 차이는 외국인의 저장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⁹⁾

<표 3-4> 체류 유형별 외국인의 규모

(단위: 명)

체류자격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비영구 장기체류							
유학(D-2)	52,631	62,451	69,600	68,039	64,030	60,466	61,257
비전문취업(E-9)	190,777	188,363	220,319	234,295	230,237	246,695	270,569
방문취업(H-2)	299,332	306,283	286,586	303,368	238,765	240,178	282,670
준영구 1(취업)							
교수(E-1)	1,589	2,056	2,266	2,474	2,631	2,637	2,664
회화지도(E-2)	19,771	22,642	23,317	22,514	21,603	20,030	17,949
연구(E-3)	2,057	2,066	2,324	2,606	2,820	2,997	3,195
특정활동(E-7)	8,405	8,896	10,712	14,397	17,451	18,213	19,109
준영구 2(가족)							
방문동거(F-1)	45,258	45,632	42,212	45,092	52,674	60,927	71,203
거주(F-2)	130,290	132,329	138,669	138,418	63,362	39,704	37,504
동반(F-3)	13,665	14,652	15,409	17,607	18,795	20,150	21,809
결혼이민(F-6)	122,552	125,087	141,654	144,681	148,498	150,865	150,994
준영구 3(기타)							
재외동포(F-4)	41,732	50,644	84,912	136,702	189,508	235,953	289,427
영주(F-5)	19,276	22,446	45,475	64,979	84,140	100,170	112,742

자료 : 법무부 ·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연보자료(2014)

<표 3-4>를 통해 체류 외국인의 규모 추이를 간략히 보면 유학생 체류

9) 이하의 내용은 “체류외국인 및 이민자 노동시장 정책과제” p. 19에서 요약함.

자의 경우는 2010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비전문취업자와 방문취업자 경우는 총 비자 발급규모를 정부가 정책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고 있다. 비전문취업자는 2010년 이후 23만 명을 상회한 규모를 유지하며 방문취업자는 2009년에 가장 높은 수치(306,283명)를 보였으나 2012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방문취업 대신 재외동포 정책을 활용한 있기 때문이다.

제2절 체류 외국인의 현황 및 경제활동 실태

1. 체류 외국인의 통계현황

2015년 6월말 현재 체류외국인은 1,757,261명으로 전월(1,845,976)보다 4.8%(88,715명) 감소하였으며, 전년 같은 시기(1,698,983명)에 비해 3.4%(58,278명) 증가하였다. 국적별로 중국 878,591명(50.0%), 미국 146,811명(8.4%), 베트남 133,567명(7.6%), 태국 85,769명(4.9%), 필리핀 52,990명(3.0%)의 순이다. <표 3-5>를 보면 국적별 현황에서 국적별 외국인 체류자 중 한국계를 포함한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체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미국과 일본 같은 선진국을 제외하고서 베트남, 필리핀, 타이,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몽골 등 저개발국들의 순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고용허가제로 대한민국 정부기관과 MOU체결로 비전문인력(E-9) 체류자격으로 단순노동인력이 많이 유입되었다는 점을 말해준다.

<표 3-5> 국적별 외국인체류자 현황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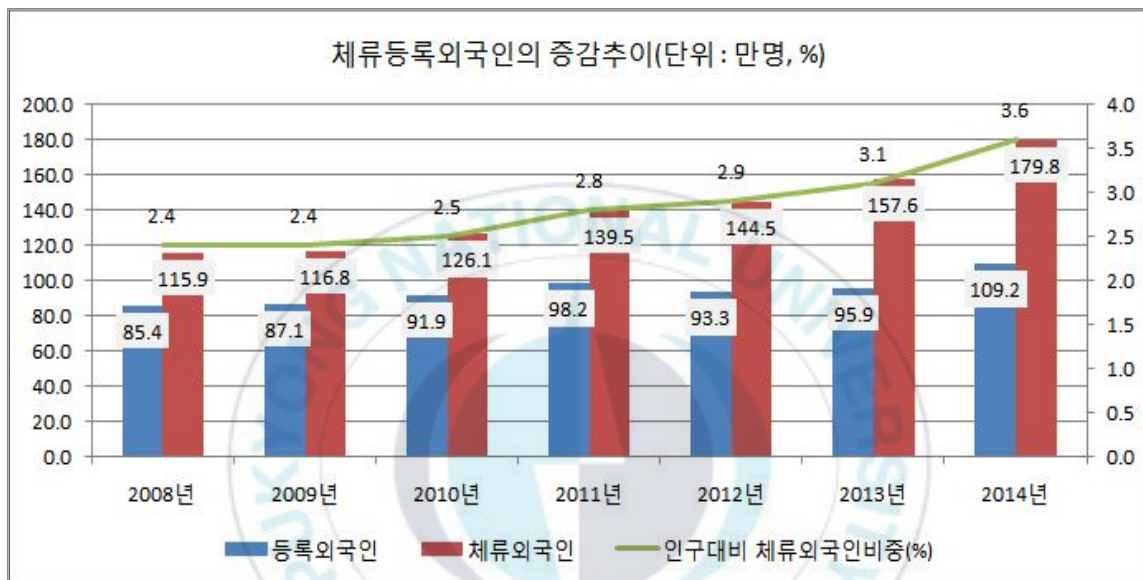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년 6월
전체	1,395,077	1,445,103	1,576,034	1,797,618	1,757,261
중국	677,954	698,444	778,113	898,654	878,951
한국계	470,570	447,877	497,989	590,856	616,109
미국	132,133	130,562	134,711	136,663	146,811
베트남	116,219	120,254	120,069	129,973	133,567
일본	58,169	57,174	56,081	49,152	31,820
필리핀	47,542	42,219	47,519	53,538	52,993
타이	45,634	45,945	55,110	94,314	85,769
인도네시아	36,971	38,018	41,599	46,945	43,217
우즈베키스탄	29,742	34,688	38,515	43,852	46,095
몽골	28,634	26,461	24,175	24,561	30,621
타이완	26,316	30,413	27,698	31,200	22,423
캐나다	21,812	23,051	23,655	24,353	25,018
스리랑카	21,554	22,354	23,383	26,057	26,514
캄보디아	17,320	24,610	31,986	38,395	42,185
방글라데시	13,465	13,584	13,600	14,644	14,253
네팔	13,256	18,908	22,015	26,790	28,805
러시아	10,547	11,361	12,804	14,425	14,253
파키스탄	10,341	10,027	10,423	11,209	11,409
인도	7,500	8,317	9,174	10,196	10,900
미얀마	6,479	9,218	12,678	15,921	18,039
영국	6,382	6,814	7,998	7,398	7,422
홍콩	5,398	5,958	7,144	10,762	2,232
뉴질랜드	3,858	4,240	4,310	4,593	3,829
기타	48,140	52,390	61,076	71,555	69,539

자료 : 법무부 ·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통계자료(2015년6월 30일 기준)

한국 내에 체류 외국인의 규모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한국 전체 인구 대비 비중도 커지고 있다. 한국 전체 인구 대비 체류외국인 비율은 2008년 2.4%에서 2014년 3.6%로 매년 증기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한국 전체 인구 중 체류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하였다. 2004년 한국에서 차지하는 체류외국인의 비중은 1.6%이며, 2014년에는 3.4%로 증가하여 지

난 10년 동안 체류 외국인의 비중은 2배 증가하였다. 한국 전체 인구 대비 체류 외국인 비중도 확대되고 있지만 OECD 평균보다 낮다.¹⁰⁾ OECD에 따르면 총 인구 대비 외국인 인구 비중은 OECD 평균 8.3%로 한국은 이에 훨씬 낮은 수준이다.

[그림 3-1] 체류 등록외국인의 증감추이



주: 등록 외국인은 대한민국에 입국한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외국인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국적을 취득하였거나 우리나라에서 출생한 외국인등이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그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외국인이 이에 해당된다.

자료: 법무부·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연보자료(2014)

10) 다만, OECD의 외국인 인구는 영구적/준영구적 이주(permanent or permanent-type migration), 한시적 이주(temporary migration) 등으로 구성된 통계로 등록 외국인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법무부의 체류 외국인 통계와는 차이가 있음. OECD 기준에 따르면 한국은 2.0% 수준. OECD, Intranational Migration Outlook 2014.

<표 3-6> 한국인구 대비 외국인 현황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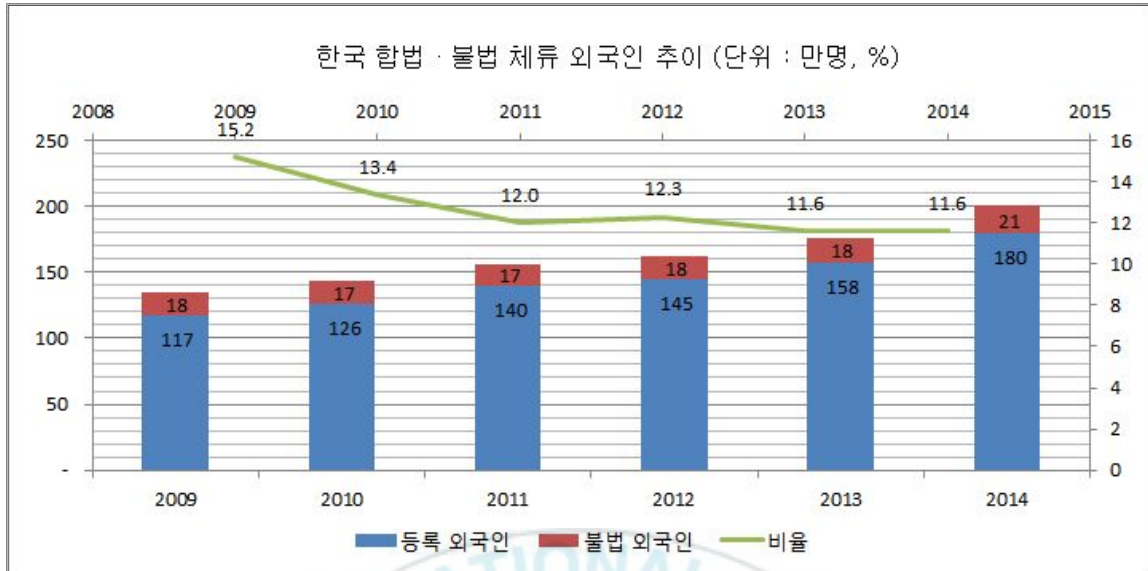
연도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등록 외국인	854,007	870,636	918,917	982,461	932,983	958,923	1,091,531
체류 외국인	1,158,866	1,168,477	1,261,415	1,395,077	1,445,103	1,576,034	1,797,618
한국 인구	48,948,698	49,182,038	49,410,366	49,779,440	50,948,272	50,219,669	50,423,955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국내통계자료(2014)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ZTITLE&parentId=A#SubCont

최근 관광, 방문 등 목적으로 위장하여 입국한 자와 단순노무업종에 취업할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 등이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지 않고 불법 체류하는 상황이 증가함으로써 2014년 불법 체류자 수는 약 20만이 되었다. 2010년에서 2014년까지 평균 불법 체류율은 12.2%, 2014년 이후 불법 체류율은 11.6%를 유지하고 있다. 체류 외국인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불법체류자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2014년 말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1,797,618명으로 2009년 1,168,477명에 비해 약 1.5배 증가했다. 한편, 전체 체류 외국인 중 불법체류자 비중은 2009년 약 15.2%였으나, 2014년에는 약 11.6%로 감소했다.

[그림 3-2] 합법·불법¹¹⁾ 체류 외국인 추이



자료 : 통계청, 법무부·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연보자료(2014)

2008-2014년 기간 동안 체류 외국인의 변화를 체류 자격별로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난다. 가장 많이 증가한 자격은 재외동포로 이 기간 동안 247,695명이 증가하여 전체 증가규모의 38.8%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영주권자(93,466명), 비전문취업(79,792명), 단기방문(77,146명)의 순이며 방문취업자는 같은 기간에 16,662명이 감소하였다. 영주권자는 이 기간 동안의 변화의 14.6%를 차지하며 비전문취업은 12.5%를 그리고 방문취업자는 2.6%를 차지하였다. 체류자격 중 기타를 제외하면 나머지 체류자격자의 변화가 이 기간 동안 전체 체류외국인 변화의 91%를 차지하였다.

11) 불법체류자는 체류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거나 출국하지 않는 체류자를 의미함.

<표 3-7> 체류 외국인인의 체류자격 변화에 따른 특징

(단위: 명)

구분	2014년 체류자	2008년 체류자	2008-2014년 체류자의 증감	증가배수 (배)	증감비 중 (%)
전체	1,797,618	1,158,866	638,752	1.6	100.0
사증면제(B-1)	93,619	29,159	64,460	3.2	10.1
관광통과(B-2)	96,113	60,985	35,128	1.6	5.5
단기방문(C-3)	146,357	69,211	77,146	2.1	12.1
비전문취업(E-9)	270,569	190,777	79,792	1.4	12.5
재외동포(F-4)	289,427	41,732	247,695	6.9	38.8
영주(F-5)	112,742	19,276	93,466	5.4	14.6
방문취업(H-2)	282,670	299,332	-16,662	0.9	2.6
기타	506,121	467,670	38,451	1.1	6.0

자료 : 법무부 ·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연보자료(2014)

2006년부터 안전행정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한국 내 거주 외국인들의 생활안정, 지역사회정착 등 이민정책 수립, 운영 및 제도 개선 및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 외국인에 대한 유형별, 국적별, 성별 등 다양한 현황조사를 매년 시행하고 있다. 작성기준시점은 매년 1회이고, 작성대상 연도의 1월 1일 00시이다. 조사대상은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한국에 90일 초과하여 장기 체류하고 있는 ‘등록외국인’(법무부 제공)), 한국국적을 취득자(혼인귀화자, 기타 사유 취득자와 외국인 부모), 외국인 주민 자녀(외국인 · 한국인 부모, 한국인부에서 출생한 0-18세 외국인주민)이다. 조사 작성방법은 등록외국인 현황 자료(법무부 제공)를 바탕으로 주민 · 가족관계등록시스템 자료와 연계하여 ‘외국인 주민 현황 조사 시스템’에 입력한다. 외국인주민 현황통계에는 국적, 성별, 지역(시도)별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결혼이민자, 재외동포, 등 기타 외국인, 한국국적을 취득한 혼인귀화자 및 외국계주민 자녀 등에 대한 통계가 포함되어 있다.

2014년 한국주민 인구 대비 외국인 수의 비율은 3.1%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4.1%로 가장 많고, 경기 4.0%, 충남 3.7% 등의 순이다.

또한 [그림 3-3]에서 전체 외국인주민의 각 지역별 분포를 2014년 기준으로 보면 경기도가 31.4%로 가장 많고, 서울이 26.4%이며 이 두 지역의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58.0%이다.

<표 3-8> 체류외국인의 지역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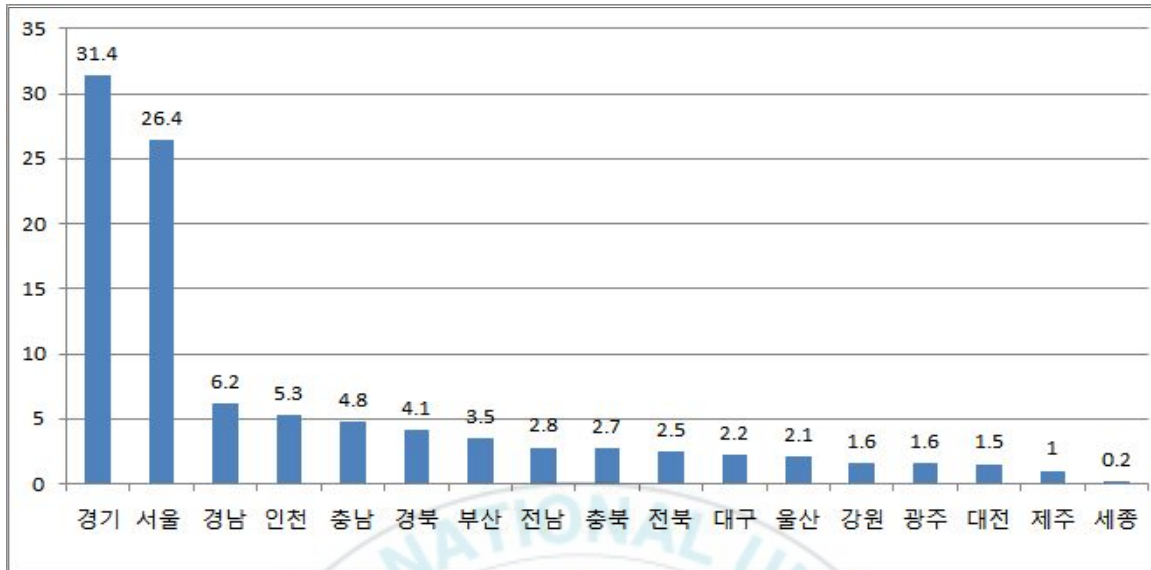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한국 주민등록 인구(2014.1.1)	외국인수 (2014)	연도별 외국인 비중		
			2012	2013	2014
전체	51,141,463	1,569,470	2.8	2.8	3.1
서울	10,143,645	415,059	4.0	3.9	4.1
부산	3,527,635	54,394	1.4	1.5	1.5
대구	2,501,588	34,986	1.2	1.3	1.4
인천	2,879,782	82,523	2.6	2.7	2.9
광주	1,472,910	24,466	1.4	1.5	1.7
대전	1,532,811	23,729	1.5	1.5	1.5
울산	1,156,480	32,772	2.2	2.4	2.8
세종	122,153	3,782	0.0	3.2	3.1
경기	12,234,630	492,790	3.6	3.6	4.0
강원	1,542,263	25,141	1.5	1.5	1.6
충북	1,572,732	43,148	2.4	2.5	2.7
충남	2,047,631	75,438	3.2	3.4	3.7
전북	1,872,965	39,777	1.9	2.0	2.1
전남	1,907,172	43,828	2.0	2.2	2.3
경북	2,699,440	64,931	2.1	2.2	2.4
경남	3,333,820	97,148	2.6	2.7	2.9
제주	593,806	15,568	1.8	2.2	2.6

자료 : 통계청, 법무부 ·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연보자료(2014)

[그림 3-3] 외국인주민의 지역별 분포(2014년 기준)

(단위: %)



자료: 법무부·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연보자료(2014)

한국 내 15세 이상 체류외국인의 지역별 분포 특성은 체류자격에 따라 상이한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보면 단순기능 인력의 경우는 제조업이 강한 수도권 및 남부 지역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유학생 경우는 서울이나 대학교가 소재한 일부 도시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결혼이민자는 수도권에 많이 집중되고 있으며 다른 유형의 외국인주민에 비교하면 비교 분포가 고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9>에서 외국인의 지역별 분포를 비중으로 보면 외국인 근로자는 경기 37.9%(93,706명)로 집중도가 가장 높고, 경남 16.2%(39,984명), 경북 9.1%(22,491명), 충남 6.3%(15,678명), 인천 6.1%(15,233명), 부산 4.7%(11,590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이민자의 경우 경기도 28.5%(36,978명), 서울 22.6%(29,237명)로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거주비중이 높았다. 유학생의 경우는 서울 32.5%(26,236명)과 경기 14.7%(11,865명)의 거주비중이 높았다. 재외동포의 경우에는 서울과 경기의 거주 비중

이 높은데 두 지역을 합치면 거주자의 비중이 75.1%(194,383명)에 이른다.

<표 3-9> 주요 특성별 15세 이상 외국인의 지역별 분포

(단위: 명)

구분	비전문 취업	방문 취업	전문 인력	유학생	재외 동포	영주자	결혼 이민자	기타
전체	247,494	261,074	47,673	80,628	258,663	102,188	129,650	128,205
서울	1,420	89,683	16,009	26,236	102,258	45,225	29,237	36,092
부산	11,590	2,406	2,081	4,085	5,592	1,961	5,719	6,861
대구	6,655	2,182	2,086	3,332	3,273	2,266	3,431	2,976
인천	15,233	12,866	1,961	617	13,796	5,397	6,531	6,682
광주	4,343	2,081	528	3,329	1,915	653	2,831	2,030
대전	1,158	1,336	1,719	4,616	2,190	1,340	2,914	1,434
울산	6,716	3,399	1,358	0	2,412	980	2,894	9,115
경기	93,706	107,576	11,853	11,865	92,125	32,054	36,978	32,943
강원	1,806	764	774	3,512	2,716	1,102	2,783	2,063
충북	7,942	6,192	1,351	4,374	5,353	1,650	3,828	2,856
충남	15,678	15,556	1,274	4,471	9,305	2,418	5,732	3,304
전북	8,399	1,755	805	3,045	2,033	1,519	4,348	3,899
전남	8,289	2,228	945	3,159	1,985	984	5,101	4,937
경북	22,491	4,797	1,413	4,629	4,371	1,586	6,129	3,765
경남	39,984	7,745	1,964	2,469	8,233	2,393	9,315	5,137
제주	2,084	508	1,552	889	1,106	660	1,879	4,111

주: 충남 데이터는 세종시 포함 자료임

자료: 통계청, 외국인고용조사(2014) 원자료

한국에서 취업활동 및 다양한 체류자격으로 거주하고 있는 총 체류외국인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20~29세(511,924명) 연령층은 가장 많은 28%를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30~39세(435,446명) 연령층이 24%, 40~49세(318,182명) 연령층이 18%, 50~59세(268,421명) 연령층이 15%, 그리고 60세 이상 연령층은 9.0%, 19세 이하 연령층은 6.0%로 각각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경제활동 연령대인 20~50대가 1,533,973명으로 85.3%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취업활동에 나이 제한이 있으며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제 그리고 전문인력 등은 대부분 20~55세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3-10> 체류외국인 연령별 분포

(단위: 명, %)

연령	외국인수	비중
전체	1,797,618	100
19세 이하	108,854	6.0%
20-29세	511,924	28.0%
30-39세	435,446	24.0%
40-49세	318,182	18.0%
50-59세	268,421	15.0%
60세 이상	154,791	9.0%

자료: 법무부·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연보자료(2014)

2. 체류외국인의 경제활동 실태

체류외국인의 경제활동실태에 대한 통계자료는 연간 단위로 조사 및 발표되는 통계청의 “외국인고용조사”¹²⁾ 자료가 대표적이다. 2014년 토대로 한국의 체류외국인의 경제활동실태와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4년 5월 말 기준 한국에 상주 15세 이상 외국인은 125만 6천명¹³⁾이며 취업자는 85만 2천명, 실업자는 4만 4천명, 비경제활동인구는 36만 명이다.

체류외국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71.4%, 고용률은 67.9%, 실업률은 4.9%이다. 외국인 취업자 수(85만 2천 명)는 같은 시점(2014년 5월)의 한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취업자 수(2,581만 1천 명)의 3.3% 수준이며, 외국인 고용률은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고용률(60.8%) 보다 7.1% 높다. 전체 외국인 중 남자 취업자는 56만 8천명(66.6%), 여자 취업자는 28만 4

12) 한국에 상주하는 15세 이상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경제활동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통계청에서 2012년부터 매년 1회씩 경제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13) 2014년 5월 말 기준 법무부 『등록외국인명부』와 『한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명부』의 15세 이상 외국인 수를 말한다.

천명(33.4%)이다. 남자의 고용률은 81.0%, 여자의 고용률은 51.3%이다.

<표 3-11> 체류외국인의 경제활동상태

(단위: 천명, %)

구분	15세 이상 인구	경제 활동 인구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 활동 인구	경제 활동 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인 구조사	42,975	27,211	26,189	1,022	15,764	63.3	60.9	3.8
남자 (구성비)	20,64 (48.9)	15,45 (57.7)	14,915 (57.8)	530 (55.7)	5,319 (33.9)	74.4	71.8	3.4
여자 (구성비)	21,689 (51.1)	11,317 (42.3)	10,95 (42.2)	422 (44.4)	103,2 (66.1)	52.2	50.2	3.7
외국인고용 조사	1,256	896	852	44	360	71.4	67.9	4.9
남자 (구성비)	701 (55.8)	592 (66.1)	568 (66.6)	24 (54.8)	360 (30.9)	84.4	81.0	4.1
여자 (구성비)	554 (44.2)	304 (33.9)	284 (33.4)	20 (45.2)	250 (69.6)	58.8	51.3	6.5

주 : ()안은 비중

자료 : 통계청, 외국인고용조사(2014) 자료

한국에서 취업상태로 상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국적별로 보면 아시아가 가장 많았다. 아시아 중 한국계중국인이 42.4%로 가장 많고, 중국인 11.5%, 베트남 9.1%, 필리핀 3.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취업자를 보면 한국계중국인이 38만6천 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베트남 취업자가 7만 2천 명, 중국 취업자가 5만 4천 명의 순으로 각각 나타났다.

<표 3-12> 체류외국인의 국적별 분포

(단위: 천명, %)

구분	15세 이상인구	경제활동 인구	취업자	비경제 활동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외국인 전체 (구성비)	1,256 (100.0)	986 (100.0)	852 (100.0)	360 (100.0)	71.4	67.9
아시아 (구성비)	1,125 (89.6)	817 (91.2)	778 (91.3)	307 (85.5)	72.7	69.1
중국 (구성비)	150 (12.0)	61 (6.8)	54 (6.3)	89 (24.7)	40.7	35.9
한국계중국인 (구성비)	533 (42.4)	414 (46.2)	386 (45.3)	119 (33.1)	77.7	72.5
베트남 (구성비)	115 (9.1)	74 (8.2)	72 (8.5)	41 (11.4)	64.2	63.1
우즈베키스탄 (구성비)	37 (2.9)	32 (3.6)	31 (3.7)	5 (1.3)	87.4	85.3
필리핀 (구성비)	40 (3.2)	31 (3.4)	30 (3.6)	9 (2.5)	77.2	76.2
인도네시아 (구성비)	35 (2.8)	34 (3.9)	34 (4.1)	1 (0.2)	97.1	96.8
일본 (구성비)	23 (1.8)	12 (1.3)	11 (1.3)	11 (3.1)	52.2	49.8
태국 (구성비)	26 (1.9)	24 (2.5)	24 (2.6)	2 (0.5)	92.4	92.4
몽골 (구성비)	17 (1.3)	11 (1.2)	10 (1.2)	6 (1.8)	62.6	60.4
기타 아시아 (구성비)	150 (12.2)	126 (14.5)	124 (14.9)	24 (6.5)	83.8	82.7
북미(미, 캐) (구성비)	85 (6.4)	49 (5.5)	46 (5.6)	39 (8.9)	58.0	54.9
유럽 (구성비)	28 (2.2)	18 (2.0)	17 (2.0)	10 (2.8)	63.8	61.1
오세아니아 (구성비)	9 (0.7)	5 (0.6)	5 (0.6)	3 (0.9)	62.7	58.6
기타 ¹⁴⁾ (구성비)	10 (0.8)	6 (0.7)	6 (0.7)	3 (0.9)	65.3	61.8

자료: 통계청, 외국인고용조사(2014) 원자료

2014년 외국인 취업자의 체류자격별 분포를 <표3-14>에서 보면 비전문

14) 중남미, 아프리카 등

취업(24만 7천명, 28.9%), 방문취업(21만 2천명, 24.8%), 유학생(8천명, 0.9%), 재외동포(14만 8천명, 17.4%), 영주(7만 2천명, 8.4%), 결혼이민(6만 1천명, 7.2%), 전문인력(4만 7천명, 5.6%)순이다.

체류자격 경제활동상태를 고용률을 중심으로 보면 전체 외국인의 67.9%가 고용하고 있는 상태로 나타났다. 비전문취업의 고용률은 99.7%로 가장 높고 대부분 취업상태이다. 방문취업의 경우 취업자 수는 21만2천 명으로 고용률은 81.0%이다. 방문취업자 중 비경제활동인구는 37천 명이다. 전문인력의 경우는 99.6%(4만7천명), 영주권자의 고용률은 70.1%(7만2천명), 재외동포는 57.3%(14만8천명) 등 순이다.

<표 3-13> 외국인고용조사 분포

(단위: 천명, %)

구분	15세 이상 인구	경제 활동 인구	취업자	비경제 활동인구	경제 활동 참가율	고용률
전체	1,256 (100.0)	896 (100.0)	852 (100.0)	360 (100.0)	71.4	67.9
비전문취업(E-9) (구성비)	247 (19.7)	247 (27.6)	247 (28.9)	0 (0.1)	99.8	99.7
방문취업(H-2) (구성비)	261 (20.8)	224 (25.0)	212 (24.8)	37 (10.2)	85.9	81.0
전문인력(E-1~E-7) (구성비)	48 (3.8)	48 (5.3)	47 (5.6)	0 (0.0)	99.7	99.6
유학생(D-2~D-4-2) (구성비)	81 (6.4)	9 (1.0)	8 (0.9)	72 (19.9)	11.2	9.6
재외동포(F-4) (구성비)	259 (20.6)	164 (18.3)	148 (17.4)	95 (26.4)	63.3	57.3
영주(F-5) (구성비)	102 (8.1)	76 (8.5)	72 (8.4)	26 (7.4)	74.1	70.1
결혼이민(F-2-1,F-6) (구성비)	130 (10.3)	66 (7.3)	61 (7.2)	64 (17.8)	50.7	47.2
기타 (구성비)	128 (10.2)	63 (7.0)	58 (6.8)	65 (18.1)	49.1	44.9

자료: 통계청, 외국인고용조사(2014) 원자료

15세 이상 외국인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15~29세(40만8천명) 연령층은 가장 많은 32.5%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는 30~39세(32만7천명) 연령층이 26.0%, 40~49세(21만5천명) 연령층이 17.1%, 50~59세(19만7천명) 연령층이 15.7%, 그리고 60세 이상 연령층은 8.7%로 각각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경제활동 연령대인 20~50대가 75.6%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취업활동에 나이 제한이 있으며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제 그리고 전문인력 등은 대부분 20~55세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연령대인 20~50대가 비수도권보다 수도권 집중도가 많았다.

15세 이상 외국인의 연령별 분포를 학력별로 보면 1,256,000명의 고졸이 40.3%(506,000명)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중졸 이하는 28.0%(351,000명)이다. 그리고 나이 많을수록 고졸이 비중도가 높고, 나이가 적을수록 대졸 비중도가 높았다.

<표 3-14> 외국인고용조사 연령 및 학력별 분포

(단위: 천명, %)

구분		15세 이상 외국인	1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외국인 합계 (연령계층별 구성비)		1256 (100.0)	408 (32.5)	327 (26.0)	215 (17.1)	197 (15.7)	108 (8.7)
지역	수도권 (구성비)	828 (65.5)	232 (56.8)	204 (62.5)	155 (72.3)	154 (78.0)	83 (76.8)
	비수도권 (구성비)	427 (34.5)	176 (43.2)	123 (37.5)	60 (27.7)	43 (22.0)	25 (23.2)
교육 정도	중졸 이하 (구성비)	351 (28.0)	68 (16.6)	69 (21.2)	80 (37.2)	77 (39.2)	57 (52.2)
	고졸 (구성비)	506 (40.3)	159 (39.1)	137 (41.9)	93 (43.3)	87 (44.2)	30 (27.5)
	대졸 (구성비)	325 (25.9)	149 (36.6)	97 (29.6)	34 (15.7)	26 (13.3)	19 (16.9)
	대졸 이상 (구성비)	74 (5.8)	31 (7.7)	24 (7.3)	8 (3.8)	7 (3.3)	4 (3.4)

자료: 통계청, 외국인고용조사(2014) 원자료

제4장 외국인 상용근로자 실태 및 상용직 취업결정요인 분석

제1절 연구 방법 및 분석자료

1. 연구방법

본 연구의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노동시장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및 생활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종사상 지위별(상용직, 임시·일용직)로 빈도분석 및 교차분석을 실시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인 외국인근로자 종사상지위별 취업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할 것이다.

2. 분석 자료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통계청의 2014년도 『외국인고용조사』 원시자료 이다. 이 조사는 한국에 체류 외국인의 취업여부, 취업분야 등 경제활동상태를 파악하여 외국인력 정책 및 국내 노동시장분석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 내에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의 외국인 중 전국의 모든 시군구에서 표본으로 추출된 10,000명을 2012부터 매년 조사하고 있다.

조사항목은 국내 상주하는 외국인의 학력, 혼인 상태, 거처종류 등 기본사항과 성별, 국적, 체류자격별, 취업자 특성 사항(산업, 직업, 취업 시간, 임금 등) 등 34개의 다양한 변수를 포함하고 있어 본 연구에 적합한 자료

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4년도 『외국인고용조사』 원시자료를 활용하여 한국 노동시장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 실태와 상용직 취업 결정요인을 분석할 것이다.

제2절 변수정의 및 분석 모형

본 연구의 목적과 연구문제 검증을 위해 사용된 주요 자료 분석모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체류외국인들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 평균, 표준편차를 실시하였다. 둘째는 체류외국인의 취업결정 요인에 어떤 변수들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 χ^2 검증을 실시하였다. 셋째는 외국인의 취업결정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binary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자료 분석을 위해 IBM SPSS 21.0(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통계패키지를 활용하였다.

1. 변수정의 (종속변수, 독립변수)

종속변수는 외국인근로자 종사상 지위변수이며, 상용직을 1, 임시·일용직을 0으로 한 더미변수이다. 독립변수는 인적속성변수(성별, 연령, 혼인상태, 학력), 일자리 속성변수(산업, 직업, 산업체규모, 근무지역), 기리고 국적 변수와 체류자격, 배우자국적 변수를 사용한다.

독립변수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성별변수는 남성 1, 여성 0으로 더미변수를 처리 했으며, 연령변수는 각 세대구간별로 더미변수를 취했다. 다음 변수는 교육이며 교육변수는 연속변수이다. 근무지역변수는 수도권 1, 비수도권 0으로 더미변수를 했으며, 국적변수는 한국계중국인, 아시아, 비아시아별로 각 더미변수를 취했다. 그 다음 배우자 국적변수는 한국 1, 외국 0으로 더미변수를 했고, 체류자격 변수 경우는 방문취업 및 제외동포 1, 비전문취업 0으로 더미변수를 했다. 그리고 사업체규모변수는 대기업 1, 중소기업 0으로, 산업변수 경우는 제조업 1, 비제조업 0으로 더미변수를 처리했다. 직업변수는 관리자 및 전문가, 사무·서비스·판매종사자, 기능원 및 기계조립, 단순노무 및 농림어업별로 각 더미변수를 취했다.

<표 4-1> 변수의 정의

변수	변수명	변수정의
종속변수	외국인 근로자 상용직 여부	상용직=1, 임시·일용직=0
독립변수	성별	남=1, 여=0
	연령	더미변수(15~29세)=1, 30~39세=1, 40~49세=1, 50세 이상=1
	교육	연속변수
	근무지역	수도권=1, 비수도권=0
	국적	더미변수(한국계중국인)=1, 아시아=1, 비아시아=1
	배우자 국적	한국=1, 외국=0
	체류자격	방문취업 및 제외동포=1, 비전문취업=0
	사업체규모	대기업=1, 중소기업=0
	산업	제조업=1, 비제조업=0
	직업	더미변수(관리자 및 전문가=1, 사무·서비스·판매종사자=1, 기능원 및 기계조립=1, 단순노무 및 농림어업=1)

2. 분석모형(로지스틱 회귀분석)

외국인근로자 상용직 취업결정요인에 대한 분석모형은 이분형 로지스틱 모형(binary logistic model)을 사용하며,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y^* = X\beta + \varepsilon \quad (1)$$

식(1)의 y^* 는 관측 불가능한 잠재변수 이고, X 는 상용직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 이다. 그리고 β 는 로짓계수 이며, ε 는 오차항을 의미한다. 관측 가능한 이항변수는

$y=1$ (상용직) if $y^* > 0$, $y=0$ (임시·일용직) if $y^* \leq 0$ 로 정의된다.

제3절 외국인 상용근로자 실태(기술 통계)

1.빈도 분석

외국인근로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2>과 같다.

먼저 성별의 경우는 남성이 55.8%로 여성 44.2%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은 아시아 지역(89.6%)이 비아시아 지역(10.4%)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연령은 15~29세(32.5%)가 가장 많았고, 30~39세(26.1%), 40~49세(7.1%), 50~59세(15.7%), 60세 이상(8.6%)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졸이 40.3%였고 다음으로 중졸 이하(28.0%), 대졸(25.9%), 대졸 이상(5.9%) 순으로 나타났다. 혼인 상태는 현재 배우자가 있다는 비중이 61.8%로 배우자가 없다는 비중(38.2%)보다 많았다.

<표 4-2> 체류외국인의 사회학적 특성

변인		빈도	백분율(%)
합계		1,255,567	100.0
성별	남	701,107	55.8
	여	554,460	44.2
국적	아시아	1,124,806	89.6
	비아시아	130,761	10.4
연령	15~29	408,345	32.5
	30~39	327,088	26.1
	40~49	215,177	17.1
	50~59	197,134	15.7
	60세 이상	107,824	8.6
학력	중졸이하	351,118	28.0
	고졸	506,363	40.3
	대졸	324,614	25.9
	대졸이상	73,472	5.9
혼인 상태	배우자 있음	775,571	61.8
	배우자 없음	480,050	38.2

자료: 통계청, 외국인고용조사(2014) 원자료

체외국인의 경제적 현황을 살펴본 결과는 <표 4-3>과 같다. 거처 종류 형태는 일반주택이 55.2%로 가장 많았고 기숙사(24.1%), 아파트(16.8%), 오피스텔(2.1%), 기타(1.9%) 순으로 나타났다.

점유형태는 전세, 월세는 54.8%로 가장 많았고 무상(31.7%), 자기 집(13.5%) 순이다.

월수입은 100만원~200만원 미만은 39.7%로 가장 높은 수준이고 200만원~300만원 미만이 18.3%, 300만원 이상은 4.3%, 100만원 미만은 2.8%로 나타났다.

<표 4-3> 체류외국인의 경제적 현황

변인		빈도	백분율(%)
합계		1,255,567	100.0
거처 종류	일반주택(원룸, 다가구, 연립, 다세대 등)	692,783	55.2
	아파트	211,177	16.8
	기숙사	301,967	24.1
	오피스텔	26,054	2.1
	기타 주택이 아닌 거처(컨테이너, 판잣집 등)	23,586	1.9
점유형 태	자기 집	169,913	13.5
	전세, 월세	687,478	54.8
	무상(회사, 학교 등에서 제공)	398,176	31.7
월수입	100만원 미만	34,889	2.8
	100만원~200만원 미만	498,199	39.7
	200만원~300만원 미만	230,094	18.3
	300만원 이상	59,653	4.3
	미응답	438,732	34.9

자료: 통계청, 외국인고용조사(2014) 원자료

체류외국인의 경제활동 실태를 취업여부, 구직경로, 주당취업시간, 구직 희망여부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외국인의 취업여부와 구직태도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구직경로, 주당 취업에 걸린 시간 등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4-4>과 같다.

먼저 경제활동상태를 보면 취업자는 67.9%, 실업자는 3.5%로 나타났고 경제활동외국인은 71.4%, 비경제활동외국인은 28.6%로 나타났다.

구직경로를 보면 다양한 방법 중에서 대중매체 1.2%, 민간 직업알선기 과 0.9%친구 및 동료 0.7% 등의 순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고 기타는 가장 많이 96.5%로 나타났다. 주당 취업시간을 보면 60시간 이상은 32.5%로

가장 많고, 30~40시간 25.2%, 50~60시간 21.0%, 40~50시간 15.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직희망여부는 아니오 26.3%, 예 2.3%, 미응답 71.4%로 각각 나타났다.

<표 4-4> 체류외국인의 경제활동 실태

변인		빈도	백분율(%)
합계		1,255,567	100.0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852,122	67.9
	실업자	44,305	4.9
	미취업자(비경제활동)	359,140	28.6
구직경로	공공 직업알선기관	7,449	0.6
	민간 직업알선기관	11,213	0.9
	대중매체 (TV, 신문, 잡지, 인터넷 등)	14,510	1.2
	학교, 학원	1,368	0.1
	친척, 친구, 동료	9,284	0.7
	기타	1,211,743	96.5
주당 취업시간	일시휴직	19,136	1.5
	20시간 미만	23,126	1.8
	20~30시간	32,339	2.6
	30~40시간	315,882	25.2
	40~50시간	163,669	15.4
	50~60시간	263,508	21.0
	60시간 이상	407,908	32.5
구직희망 여부	예	28,960	2.3
	아니오	330,661	26.3
	미응답	895,946	71.4

자료: 통계청, 외국인고용조사(2014) 원자료

외국인 취업자의 직업 및 산업 형태는 산업체규모를 보면 중소기업이 97.7%, 대기업이 2.3%로 나타났다. 비제조업이 66.7%, 제조업이 33.3%이

다.

직업 형태를 보면 기능원 및 기계조립 28.5로 가장 많고 단순노무 및 농림어업 21.7%, 사무·서비스·판매종사자 9.9%, 관리 및 전문가 7.8%이다.

<표 4-5>에서 성별별로 산업체규모, 산업, 직업 형태를 보면 대기업 및 중소기업에 남성이 여자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제조업에서도 남성이 높았지만 비제조업에서는 여성이 약간 높았다. 직업은 기능원 및 기계조립, 단순노무 및 농림어업 및 관리 및 전문가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고 사무·서비스·판매종사자가 남성보다 여성이 2배 정도 높았다.

<표 4-5> 체류외국인의 산업 및 직업 형태

변인			빈도	백분율(%)
합계			1,255,567	100.0
산업체 규모	대기업	남	20,564	72.3
		여	7,892	27.7
	중소기업	남	680,543	55.5
		여	546,568	44.5
산업	제조업	남	327,194	78.3
		여	90,914	21.7
	비제조업	남	373,913	44.6
		여	463,546	55.4
직업	관리자 및 전문가	남	61,047	62.7
		여	36,296	37.3
	사무·서비스·판매종사자	남	43,052	34.6
		여	81,488	65.4
	기능원 및 기계조립	남	298,844	83.6
		여	58,656	16.4
	단순노무 및 농림어업	남	164,920	60.5
		여	107,820	39.5
	미응답		403,445	32.1

자료: 통계청, 외국인고용조사(2014) 원자료

세계화에 따라 한국에서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상주하고 있다. 그들을 아시아 중심으로 살펴보면 한국계 중국인들이 42.4%로 집중도가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중국 12.0%, 베트남 9.1%, 우즈베키스탄 2.9%, 필리핀 3.2%, 인도네시아 2.8%, 태국 2.0%, 일본 1.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비아시아 경우는 북미 6.7%, 유럽 2.2%, 오세아니아 0.7%, 기타 0.8로 나타났다.

<표 4-6> 체류외국인의 국적 형태

변인	빈도	백분율(%)
합계	1,255,565	100.0
한국계 중국인	532,579	42.4
중국인(한국계 제외)	150,081	12.0
베트남	114,789	9.1
우즈베키스탄	36,504	2.9
필리핀	39,877	3.2
인도네시아	35,302	2.8
일본	23,081	1.8
태국	25,573	2.0
몽골	16,858	1.3
기타 아시아	150,163	12.0
북미	84,594	6.7
유럽	27,726	2.2
오세아니아	8,709	0.7
기타	9,732	0.8

주: 기타는 중남미, 아프리카 등

자료: 통계청, 외국인고용조사(2014) 원자료

체류외국인의 체류자격을 살펴보면 취업자격이 많은 것을 보인다. 이는 위의 <표 4-6>에서 아시아 국적이 많은 것과 상관있다.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국가들은 아시아 국가들이다. 비전문취업 및 방문취업 경우는 40.5%, 재외동포는 20.6%, 결혼이민자는 10.3%, 영주자 8.1%, 유학생

6.4%, 전문인력 3.8%, 기타는 10.2%로 각각 나타났다.

체류기간을 살펴보면 5년~10년이 21.5%로 가장 높고 2년~3년 17.6%, 1년~2년 14.5%, 1년 미만인 13.9% 등으로 고르게 나타났다.

계속체류여부는 체류하기를 원함이 78.9%로 압도하게 높았다. 체류하기를 원하지 않음이 13.0%이다.

체류계속방법은 체류기간 연장이 49.2%로 가장 높고 영주자격 취득 14.8%, 한국 국적취득 9.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7> 체류외국인의 체류자격 및 계속체류희망 형태

변인		빈도	백분율(%)
합계		1,255,565	100.0
체류 자격	비전문취업(E-9)	247,491	19.7
	방문취업(H-2)	261,073	20.8
	전문인력(E-1~E-7)	47,673	3.8
	유학생(D-2, D-4-1)	80,626	6.4
	재외동포(F-4)	258,663	20.6
	영주자(F-5)	102,187	8.1
	결혼이민자(F-2-1, F-6)	129,650	10.3
	기타	128,205	10.2
체류 기간	1년 미만	174,092	13.9
	1년~2년 미만	182,074	14.5
	2년~3년 미만	220,565	17.6
	3년~4년 미만	168,766	13.4
	4년~5년 미만	102,008	8.1
	5년~10년 미만	270,230	21.5
	10년 이상	137,832	11.0
계속 체류 여부	체류하기를 원함	990,574	78.9
	체류하기를 원하지 않음	162,806	13.0
계속 체류 방법	체류기간 연장	617,303	49.2
	체류자격 변경	65,963	5.3
	영주자격 취득	185,887	14.8
	한국국적 취득	118,257	9.4
	기타	3,164	0.3

자료: 통계청, 외국인고용조사(2014) 원자료

2. 주요변수의 종사상 지위별(상용직, 임시·일용직) 특성 - 교차분석

<표 4-8>은 외국인근로자의 성별에 따른 종사상 지위(상용직, 임시·일용직)를 파악하기 위해서 성별과 종사상지위 변수를 교차분석한 표이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5세 이상 외국인 전체 취업자의 수는 852천 명인데 대부분은 임금근로자인 817천(95.9%) 명이며 총 상용직근로자는 531천명, 임시·일용직근로자는 286천 명이다. 이들의 전체 임금근로자의 남자 상용직근로자는 399천명이고 임시·일용직근로자는 148천명이다. 여자 상용직근로자는 132천명이고 임시·일용직근로자는 138천명이다. 상용직근로자의 남성의 차지하는 비중(75.1%)은 여성 24.9%보다 3배 정도 높았다. 여성 임시·일용직근로자는 상용직근로자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표 4-8> 종사상지위별 외국인 취업자

(단위: 천명, %)

구분	외국인 취업자	상용근로자	임시·일용근로자
전체 외국인 (종사상지위별 구성비)	817 (100.0)	531 (62.3)	286 (33.6)
남자 (종사상지위별 구성비) (성별 구성비)	547 (100.0) (67.0)	399 (72.9) (75.1)	148 (27.1) (51.9)
여자 (종사상지위별 구성비) (성별 구성비)	270 (100.0) (33.0)	132 (48.9) (24.9)	138 (51.1) (48.1)

자료: 통계청, 외국인고용조사(2014) 원자료

상용직근로자 및 임시·일용근로자를 체류자격으로 살펴보면 방문취업 및 재외동포 체류 상용직근로자는 171천 명, 임시·일용근로자는 176천

명이고, 기타 체류 상용직근로자는 360천 명, 임시·일용근로자는 11만 명이다. 비전문직 및 전문직 등 기타 체류 상용직근로자 비중은 76.6%로 방문취업 및 재외동포 체류 상용직근로자 비중 49.2%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상용직근로자 및 임시·일용근로자를 국적을 아시아 및 비아시아로 나누고 살펴보면 아시아 출신 상용직근로자는 477천 명, 임시·일용근로자는 274천 명이고, 비아시아 출신 상용직근로자는 5만3천 명, 임시·일용근로자는 1만3천 명이다. <표4-3>에서 아시아 및 비아시아 상용직은 임시·일용직 보다 많이 나타났다.

상용직근로자 및 임시·일용근로자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및 비수도권의 상용직근로자는 임시·일용근로자보다 많았다. 수도권 상용직근로자는 307천 명, 임시·일용근로자 226천 명이고 비수도권 상용직근로자는 223천 명, 임시·일용근로자는 6만 명이다.

상용직근로자 및 임시·일용근로자를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의 상용직근로자는 359천 명, 임시·일용근로자는 5만 8천 명이며 비제조업의 상용직근로자는 172천 명, 임시·일용근로자는 228천 명이다. 제조업의 상용직 비중은 86.1%로 임시·일용직 비중 13.9%보다 훨씬 높았다. 반면 비제조업의 임시·일용직 비중 57.0%로 상용직 비중 43.0%보다 높았다.

<표 4-9> 체류자격 및 국적, 산업별 종사상지위 외국인 취업자

구분		상용직	임시일용직
합계		530,688	286,147
방문취업 및 재외동포	빈도	170,909	176,154
	백분율	49.2	50.8
기타(비전문직, 전문직 등)	빈도	359,779	109,993
	백분율	76.6	23.4
아시아	빈도	477,303	273,414
	백분율	63.6	36.4
비아시아	빈도	53,385	12,733
	백분율	80.7	19.3
수도권	빈도	307,468	226,176
	백분율	57.6	42.4
비수도권	빈도	223,221	59,971
	백분율	78.8	21.2
제조업	빈도	358,701	58,104
	백분율	86.1	13.9
비제조업	빈도	171,987	228,043
	백분율	43.0	57.0

자료: 통계청, 외국인고용조사(2014) 원자료

상용직근로자 및 임시·일용근로자 직업별 교차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표 4-10>을 보면 상용직근로자 및 임시·일용근로자의 전체 비중이 거의 비슷하다. 총 상용직근로자 중 배우자국적 외국 비중이 73.2% 상당히 많았고, 배우자 국적이 한국 비중은 26.8%이다.

또한 총 임시·일용근로자 중 배우자국적이 외국 비중이 70.7% 상당히 많았고, 배우자 국적이 한국 비중은 29.3%로 나타났다.

<표 4-10> 상용직근로자 및 임시·일용근로자 배우자국적별 교차분석

구분		상용직	임시일용직
합계		152,297	150,297
한국인 배우자	빈도	40,891	43,975
	백분율	26.8	29.3
외국인 배우자	빈도	111,753	106,322
	백분율	73.2	70.7

자료: 통계청, 외국인고용조사(2014) 원자료

상용직근로자 및 임시·일용근로자를 학력별로 교차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상용직근로자에서는 고졸 비중이 47.0%로 가장 많고 대졸이 24.6%, 중졸 이하는 23.4%, 대졸 이상이 5.1%의 순으로 나타났다. 임시·일용근로자는 고졸이 43.1%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중졸 이하가 37.9%, 대졸이 16.8%, 대졸 이상이 2.2% 각각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임시일용직보다는 상용직이 많았다.

<표 4-11> 상용직근로자 및 임시·일용근로자 학력별 교차분석

구분		상용직	임시일용직
합계		530,688	286,147
중졸이하	빈도	123,938	108,533
	백분율	53.3	46.7
고졸	빈도	249,398	123,244
	백분율	66.9	33.1
대졸	빈도	130,441	48,001
	백분율	73.1	26.9
대졸 이상	빈도	26,912	6,369
	백분율	80.9	19.1

자료: 통계청, 외국인고용조사(2014) 원자료

상용직근로자 및 임시·일용근로자를 직업별을 < 표4-5>에서 살펴보면 전체 상용직 취업자(530,688명) 중 기능직 및 단순노무직 취업자가 411,584 명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관리자 및 전문직이 68,009명, 사무 및 판매서비스가 51,096 명의 순이다. 그리고 전체 임시·일용직 취업자(286,147명) 중 기능직 및 단순노무 취업자는 211,056 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사무 및 판매서비스가 57,348 명, 관리자 및 전문직이 17,743 명으로 각각 나타났다. 또한 사무 및 판매서비스의 경우는 상용직보다 임시·일용직 많지만 관리자 및 전문직 및 기능직 및 단순노무의 경우는 상용직이 많았다.

<표 4-12> 상용직근로자 및 임시·일용근로자 직업별 교차분석

구분		상용직	임시일용직
합계		530,688	286,147
관리자 및 전문직	빈도	68,009	17,743
	백분율	79.3	20.7
사무 및 판매서비스	빈도	51,096	57,348
	백분율	47.1	52.9
기능직 및 단순노무	빈도	411,584	211,056
	백분율	66.1	33.9

자료: 통계청, 외국인고용조사(2014) 원자료

상용직근로자 및 임시·일용근로자를 임금별 교차분석을 한 결과는 <표 4-12>과 같다. 전체 상용직의 100만원~200만원 미만 비중은 58.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200만원~300만원 비중이 31.8%, 300만원 이상 비중이 8.0%, 100만원 미만 비중이 1.1%의 순으로 각각 나타났다. 임시·일용직의 경우는 100만원~200만원 미만 비중은 65.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200만원~300만원 비중이 21.6%, 100만원 미만 비중이 10.2%, 300만

원 이상 비중이 2.9%로 각각 나타났다.

<표 4-13> 상용직근로자 및 임시·일용근로자 임금별 교차분석

구분		상용직	임시·일용직
합계		530,688	286,147
100만원 미만	빈도	5,722	29,167
	백분율	16.4	83.6
100만원~200만원 미만	빈도	311,417	186,782
	백분율	62.5	37.5
200만원~300만원 미만	빈도	168,291	61,803
	백분율	73.1	26.9
300만원 이상	빈도	45,259	8,395
	백분율	84.4	15.6

자료: 통계청, 외국인고용조사(2014) 원자료

제4절 외국인근로자 상용직 취업여부 결정요인

본 연구의 핵심 내용인 외국인 근로자의 상용직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추정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14>과 같다. 분석결과 설명에 앞서 회귀모형의 적합도 여부를 살펴본 결과, Hosmer - Lemeshow 검정 값이 5% 유의수준에서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chi^2=14.450$, $p=0.071$).

<표 4-14> 상용직 외국인근로자 취업에 미치는 영향력

구분		B	S.E,	유의확률	승산비
성별(남자=1)		.552 ***	.126	.000	1.736
연령 (기준: 15~29세)	30~39세	.262	.169	.121	1.299
	40~49세	.307 *	.177	.083	1.359
	50세 이상	.226	.190	.234	1.254
학력		.102 ***	.026	.000	1.108
근무 지역(수도권=1)		-.228 *	.117	.051	.796
국적 (기준: 한국계 중국인)	아시아	-.093	.155	.547	.911
	기타	.736 **	.257	.004	2.087
배우자국적(한국=1)		-.575 ***	.143	.000	.563
체류자격(방문취업 및 재외동포=1)		-.306 *	.150	.041	.737
사업체규모 (기준: 50인 미만)	50~299인	.522 ***	.149	.000	1.685
	300인 이상	.157	.278	.572	1.170
산업(제조업=1)		2.385 ***	.156	.000	10.861
직업 (기준: 관리자 및 전문직)	사무·서비스·판매	-.470 *	.244	.054	.625
	기능원·기계조립	-1.609 ***	.269	.000	.200
	농어업·단순노무	-1.648 ***	.255	.000	.192
상수항		-.944	.456	.038	.389
χ^2		14.450			
-2Log		2081.119			
Nagelkerke R^2		0.379			
N		8,632			

주 : *는 0.1, **는 0.05, ***는 0.01 이하에서 유의함.

먼저 <표 4-14>에서 성별변수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승산비가 1.736로 추정되었다. 이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상용직 취업가능성이 1.7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령변수는 기준변수인 15~29세에 비해 40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0대 및 50대 이상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40대 연령층이 20대 연령층에

비해 상용직 취업가능성이 1.4배 높다고 할 수 있다.

학력변수의 경우는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학력이 높을수록 상용직 취업가능성이 높았다. 즉 학력의 승산비가 1.108로 추정되어, 학력이 한 단위 증가할 때 상용직 취업확률은 1.108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지역 변수는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기준 변수인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 지역에 종사하는 것이 상용직 취업을 높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국적변수의 경우는 기준변수인 한국계 중국인에 비해 비아시아지역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시아 지역은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아시아지역일수록 상용직 취업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추정결과는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로 전문직에 많이 취업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배우자국적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배우자가 한국인일수록 상용직 취업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류자격 변수의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기준변수인 방문취업 및 재외동포가 상용직취업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업체규모 변수의 경우는 50~299인 사업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300인 이상 사업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준변수인 50인 미만 사업체에 비해 50~299인 사업체가 상용직 취업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사업체규모가 클수록 상용직취업 가능성이 높다. 기준변수인 소기업(50인 미만)에 비해 중기업(50~299인)은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으

나 300인 이상 대기업에는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 않는 것은 외국인 근로자들 대다수가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종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산업변수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기준변수인 제조업이 비제조업에 비해 상용직 취업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준변수인 관리자 및 전문직에 비해 사무·서비스·판매변수와 기능원·기계조립, 농어업·단순노무직이 상용직가능성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외국인근로자의 성별이 남성일수록, 연령층이 40대일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사업체규모가 소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일수록, 산업이 제조업일수록, 국적이 비아시아지역일수록 상용직 취업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근무지역이 비수도권 지역일수록, 국적이 비아시아 국적일수록, 체류자격이 방문 및 재외동포가 아닐수록, 직업이 관리자 및 전문직일수록 상용직 취업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제5장 결론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본 연구는 통계청의 『외국인고용조사』 2014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외국인 근로자 실태 및 상용직 취업결정요인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 근로자의 경제활동실태를 분석한 결과, 내국인 근로자에 비해 경제활동 참가율(외국인 71.4%, 내국인 63.0%), 고용률(외국인 67.9%, 내국인 60.8%), 실업률(외국인 4.9%, 내국인 3.6%) 등이 높게 나타났다. 주거실태의 경우는 외국인 근로자의 80% 가량이 일반주택(55.2%)과 기숙사(24.1%)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주택 점유형태는 54.4%가 전세 및 월세로 생활하고 있었다. 그리고 소득(임금)과 노동시간을 분석해 본 결과, 외국인 근로자의 44%가 200만원 미만의 저임금을 받고 있었으며, 32.5%가 주 6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이를 기초로 외국인의 상용직 취업결정요인을 분석하였으며 다음과 같다.

외국인 근로자의 상용직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인적자원 요인을 분석한 결과 성별은 외국인 남성 취업자가 여성 취업자에 비해 상용직 취업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외국인 근로자의 연령층이 40대일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상용직 취업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기존의 일반적인(내국인 근로자) 취업결정요인 분석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외국인 근로자의 인적자원변수(성별, 연령, 학력) 중 “여자보다 남자가,

연령이 40대일수록, 고학력일 때 상용직 취업할 확률이 높은 것이다.”라는 연구가설이 모두가 지지되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일자리속성 요인이 상용직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사업체규모가 기준변수인 50인 미만 사업체에 비해 50~299인 사업체가 상용직 취업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산업은 비제조업에 비해 제조업이 상용직 취업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300인 이상 대기업에 고용하는 비중이 상당히 낮고, 대부분 외국인근로자들은 인력부족이 많은 중소기업에 고용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근무지역, 국적, 배우자국적, 체류자격 및 직업 변수는 각각 상용직 취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근무지역은 비수도권에 비해 수도권, 국적은 비아시아에 비해 한국계 중국인, 배우자국적은 한국에 비해 외국, 체류자격은 비전문취업에 비해 방문 및 재외동포, 직업은 사무·서비스·판매변수와 기능원·기계조립, 농업·단순노무직일수록 상용직 취업할 확률이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추정결과는 수도권지역에 비해 비수도권지역, 방문 및 재외동포에 비해 비전문취업 체류자격의 상용직근로자 비중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국적의 경우는 비아시아가 상용직 취업할 확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비아시아인 미국, 유럽 등 지역에서 전문취업자(교수, 연구, 회화지도 등)들이 많이 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무·서비스·판매변수와 기능원·기계조립, 농업·단순노무직 보다는 관리자 및 전문직의 상용직 취업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배우자국적 경우는 배우자가 한국일수록 상용직 취업할 확률이 낮다는 것은 배우자국적 한국보다 배우자가 외국은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제2절 연구 한계 및 향후 과제

세계화에 따라 국제이동이 활발해지고 현대사회는 한 국가 내에 자국민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과 더불어 지내고 산다. 외국인들의 필수적인 존재가 된 지금 시대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문제들을 제대로 된 대처가 되지 않을 때는 사회적인 문제가 심화될 것이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논의는 인적 차원에서 정책과 제도적 접근이 결정되어야 할 문제이기도 한다.

외국인근로자의 상용직 취업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되기 위해서는 그 바탕에서 경제, 사회, 문화적 요소가 중심적 배경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이고 학제적인 연구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한국에 상주하는 15세 이상 10,000명 외국인을 중심으로 분석했으며 기존의 선행연구에 비해 대규모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했다는 측면과 한국 최초로 외국인근로자의 관점에서 취업결정요인을 실증분석했다는 측면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다. 하지만, 2014년도 한 해의 조사 자료만을 가지고 횡단면 분석한 부분과 수요자인 기업측의 변수를 고려하지 못한 부분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결정요인을 분석할 시에는 장기간의 자료를 활용한 종단면분석과 기업측의 정보도 고려하여 분석할 필요, 또한 상용직 취업결정요인의 규명과 외국인의 상용직취업 및 고용안정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시점에서 외국인 취업관련 연구과정에서 본 연구는 상용직 취업실태 및 현황분석 시 활용될 수 있다.

참고문헌

- 강라현(2012), “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김연수(2012), “외국인 및 이민자 노동시장정책: 현황과 과제”, 한국개발연구원.
- 김충련, “SPSS 데이터 분석”, 2012.
- 노재철(2009), “외국인 근로자의 법적지위와 권리보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 박두양(2013),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 생활 실태 및 적응에 관한 연구: 중국인 근로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14), 통계연보
- 류장수(2015), “지역 인재의 유출 실태 및 결정요인 분석”.
- 설동훈(1992), “한국의 노동시장과 외국인노동자”, 경제와 사회 제1권 제15호
- 설동훈(2000), 「노동력의 국제이동」, 서울대학교 출판부
- 손윤석(2013), “이주노동자의 고용허가제의 개선 방안”.
- 송병준(1997), 『외국인 노동자의 현실과 미래』, 미래인력연구센터.
- 유광철·오동훈(2014), “유혈별 외국인 주민의 유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이규용·노용진 외(2014), “체류 외국인 및 이민자 노동시장 정책과제”.
- 유길상·이규용(2002),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실태 및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유승균(2010), “한국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결정요인에 관한 실태분석”.

윤정혜(2014), “고용동향브리프3월호-최근외국인고용동향과시사점”

이관형·조흠학(2012),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환경 및 안전보건실태 조사 연구”.

이번송·권주안(1997),“ 외국인 근로자고용의 경제적 영향과 정책방향”.

이학식·임지훈(2011), “SPSS 18.0 매뉴얼”.

정봉선(2014),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 인권실태 현황 및 개선 방안 연구”, 석사학위 논문.

조순점(2010), “고령자 구직활동 실태 및 취업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진광천(2012),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 실태 및 근로조건의 개선 전략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천정훈(2005), “부산지역의 외국인 노동자 인권실태 및 적응에 관한 연구”, 석사 학위 논문.

통계청(2014), 『외국인고용조사』, 보도자료.

한상완(2015), “국내 외국인 체류자의 특징과 시사점”, 현대연구원.

한형서·최미옥(2013), “외국인 체류자 증가에 따른 사회문제의 유형과 실태분석”.